

대한민국정부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741호 2001. 3. 3. (토)

안 내 문

각급기관
독자여러분

2000년10월 1일부터 관보전문(全文)을 열린정부 홈페이지로 5大洋6大洲에 24시간 공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짜변경시점 : 09 : 00)

접속방법 → <주소> <http://open.korea.go.kr>

<메뉴> 전자관보.....click

관보안내문
<오늘의 관보> ← → <내일의 관보>

접속관련 기술적인 문제해결은 02)3703-3383으로 문의

관보의 법적우선효력은 종이관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보운영체제 공개

<2000. 4. 1.부터(1차), 5. 1.(2차), 10. 1.부터(3차) 검중>

<접수마감> 평 일 14 : 00
토요일 11 : 00

◎근거법규 : 관보편찬예규 제13조

D-3일 접수통제·편집 → D-2일 교정·인쇄 → D-1일 제책·수송 → D일 보급·배포

※개재일자

- 위 체제에서 공휴일은 게재일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매주 수요일은 조달관보 휴간, 공휴일은 관보, 조달관보 모두 휴간

게재의뢰공문(시행문) 1부 → FAX : 3703-5507

제목우측에 고시·공고번호를 반드시 기재요망(Fax, mail 짝짓기 착오예방)

관보게재근거법규를 명시-예시 : ...법, 시행령, 시행규칙제○조제○항 근거

※현행법령(대한민국법령집)→327個(2000.10. 현재)

24시간 365일 접수

게재문안(첨부물) 1부 → E-mail : gwanbo@mogaha.go.kr

□방문·우편접수는 받지않음. 단, 법령, 수입인지 첨부건, 특수문건만 당분간 제외

■접수·게재 확인전화는 삼가시고 16 : 00 이후 보낸사람 스스로 PC조작하여(수신확인 서비스 설정) 확인, 또는 내일의 관보(익일, 익일일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특수문건 게재협의 : 3703-4348~49

□관보보급, 제도개선, 기타의견 : 3703-4347

관보이용기관 및 독자께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 관보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 “안내문”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겠으니 이용직전 안내문을 먼저 읽고 활용하시고, 각급기관은 위 관보운영체제에 대입, 게재원고를 전산·전자접수System으로 보내는 방법, 접수확인 방법을 스스로 연찬하여 관보의 전산·정보화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제공

회 람							
--------	--	--	--	--	--	--	--

발행 행정자치부 (편집 ☎ 720-4331 보급 ☎ 727-0611) 1201-4A 1995. 10. 12. 승인
(서울 중로구 세종로 77-6 ☎ 110-760) 190×268 신문용지 48.8g/㎡

【고 시】

○공군제3368부대고시제2001-1호(K-16군용항공기지구역재고시)	4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1-3호(측정분석기관정도관리의방법등에관한규정)	6
○국립지리원고시제2001-75호~제2001-80호(공공측량성과)	10
○국립지리원고시제2001-81호(기본측량성과)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57호(하천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7호(하천점용허가)	1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20호~제2001-27호(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13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1-1호(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중개정)	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9호(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24호(항만시설지정)	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25호(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1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3호(시설항로표지현황<위치>변경)	1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6호(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	1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9호~제2001-11호(공유수면점·사용허가)	17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1-21호(법인설립허가)	18
○건설교통부공고제2001-49호(철강구조물제작공정인증분야및등급)	18
○문화재청공고제2001-5호(사적보호구역추가지정예고)	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44호(측량업등록<신규>)	19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01-4호(관인조각사용및폐기)	19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1-5호(수로조사업등록)	1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1-15호(재결사항)	20
○서울체신청공고제2001-31호(법인설립허가)	20
○부산체신청공고제2001-25호(정보통신공사업등록)	21
○전북체신청공고제2001-13호(정보통신공사업등록)	21
○전남대학교공고제2001-2호(관인조각사용)	21

【지 방 자 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52호(염리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21
○부산광역시고시제2001-45호(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결정)	23
○부산광역시고시제2001-46호(부산반여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 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23
○경기도고시제2001-33호(하천정비시행계획)	23
○(서울)서초구고시제2001-9호(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28
○(서울)성북구고시제2001-13호(길음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및지형도면승인)	28
○(부산)남구고시제2001-6호(부산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	29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고시제2001-1호(김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적고시)	30
○전라북도남원교육청고시제2001-1호(행정절차미비학교시설적합확인)	30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54호(일반건설업등록공고)	31
○충청북도공고제2001-65호·제2001-67호(건설업등록공고)	31
○충청남도공고제2001-51호(도고기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공고)	32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1-19호(관인조각사용)	32
○(서울)동작구공고제2001-61호·제2001-62호(전문건설업체행정처분공고)	33

○(서울)서대문구공고제2001-74호(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34
○(서울)성북구공고제2001-64호(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34
○(서울)은평구공고제2001-76호(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35
○(부산)북구공고제2001-63호(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35
○(부산)기장군공고제2001-55호(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35
○(대구)달서구공고제2001-48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	35
○광명시공고제2001-45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	35
○안양시공고제2001-38호(전문건설업신규등록발급공고)	36
○이천시공고제2001-57호(전문건설업추가등록발급공고)	36
○평택시공고제2001-74호(전문건설업체행정처분내역공고)	36
○청주시공고제2001-66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	37
○아산시공고제2001-77호·제2001-78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	37
○여수시공고제2001-130호(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37
○화순군공고제2001-63호·제2001-64호(건설업등록공고)	37
○화순군공고제2001-65호(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공고)	38
○구미시공고제2001-76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	39
○안동시공고제2001-50호(건설업등록공고)	39
○영양군공고제2001-22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	40
○마산시공고제2001-94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	40
○합천군공고제2001-53호(공시송달공고)	40
○충청남도서산소방서공고제2001-5호(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40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공고제2001-3호(관인조각사용)	41
○경기도수원교육청공고제2001-13호(관인조각사용)	41
○경기도안산교육청공고제2001-6호·제2001-7호(관인조각사용)	45
○경기도여주교육청공고제2001-2호(관인조각사용)	51
○경기도평택교육청공고제2001-5호(관인조각사용)	52
○경기도평택교육청공고제2001-6호(관인폐기)	54
○강원도고성교육청공고제2001-1호(관인조각사용)	55
○전라북도순창교육청공고제2001-5호(관인폐기)	56
○전라북도장수교육청공고제2001-3호(관인폐기)	56
○전라남도순천교육청공고제2001-10호(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57
○경상북도경주교육청공고제2001-4호(관인조각사용)	57
○경상북도안동교육청공고제2001-2호(관인조각사용)	58
○경상북도영주교육청공고제2001-2호(관인폐기)	59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대구지방검찰청)	60
○공시최고(광주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64
○심판(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광주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65
○상속재산관리인의선임공고(광주지방법원)	71
○배당공고	72

고 시

공군제3368부대고시제2001-1호

(K-16기지군용항공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현재 해당 행정기관(시, 구,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구역 구역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1997년 5 월 건교부에서 보완을 요구해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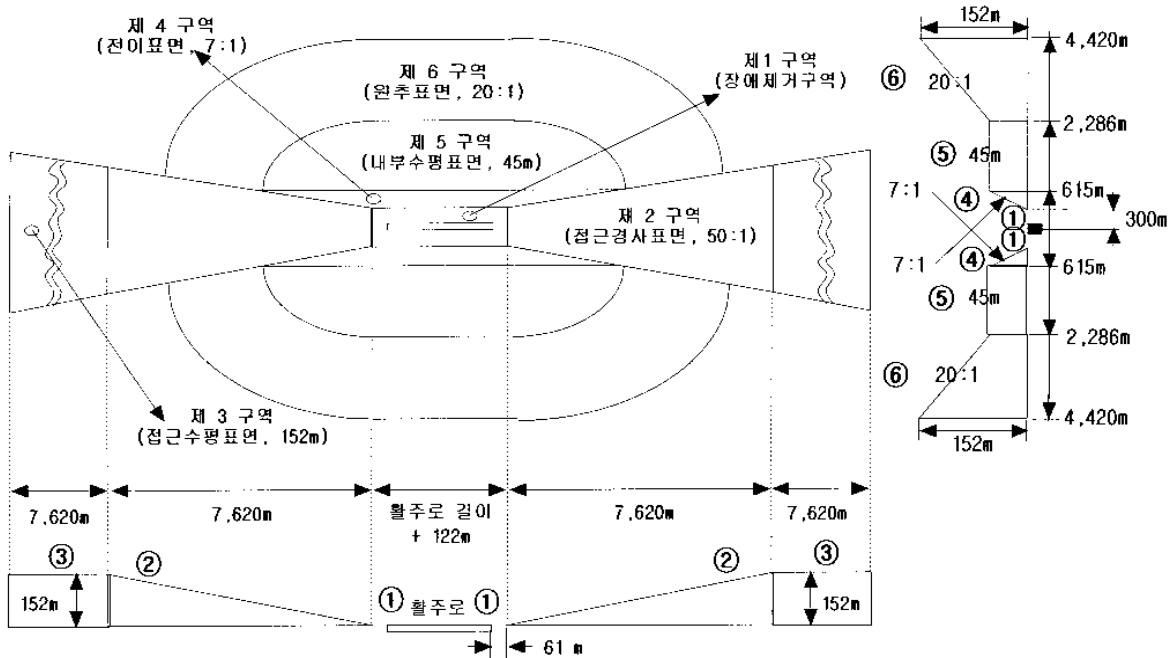
따라 K-16기지 군용항공기지구역 구역도를 정밀하게 재작성 하였으므로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항공기 비행안전과 기지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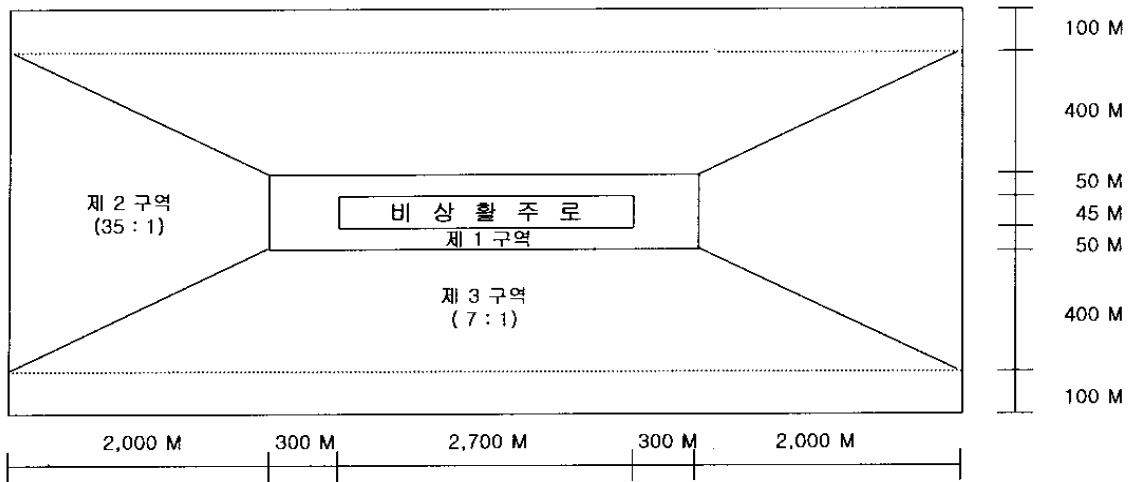
공군제3368부대장

1. 비행안전구역

가. K-16 비행안전구역



나. K-16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2. 구역별 해당지역

구역	비행안전구역
2 구역	서울시 성내동, 둔촌동, 풍납동, 방이동, 오금동, 가락동, 운정동, 장지동, 석촌동, 송파동, 신천동, 잠실동,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지역 성남시 북정동, 신촌동, 둔전동, 고등동, 시흥동, 사송동, 금토동, 성남동, 여수동,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판교동, 백현동, 궁내동, 금곡동, 삼평동, 하산운동 지역
3 구역	서울시 상봉동, 망우동, 면목동, 중곡동, 광장동, 고덕동, 명일동, 암사동, 천호동, 길동, 성내동, 둔촌동, 풍납동, 신천동 구리시 수택동, 교문동, 토평동, 아천동 지역 / 남양주시 수석동 지역 성남시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궁내동, 금곡동, 동원동 지역 / 광주군 신현리 지역 용인시 오산리, 보정리, 마북리, 언남리, 청덕리, 구갈리, 고기리, 동천리, 신봉리, 풍덕천리, 죽전리, 성북리, 상현리 지역 / 수원시 이의동, 하동 지역
4 구역	서울시 장지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지역 성남시 북정동, 태평동, 수진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둔전동, 고등동, 시흥동, 성남동, 여수동, 야탑동 지역
5 구역	서울시 장지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내곡동 지역 성남시 창곡동, 북정동, 시흥동, 태평동, 수진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시흥동, 상적동, 성남동, 하대원동, 여수동, 야탑동 지역
6 구역	서울시 가락동, 장지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세곡동, 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지역 / 하남시 학암동 지역 성남시 양지동, 창곡동, 북정동, 산성동, 단대동, 시흥동, 태평동, 고등동, 시흥동, 상적동, 금토동, 은행동, 금광동, 상대원동, 중동, 성남동, 하대원동, 갈현동, 여수동, 도촌동, 야탑동, 이매동, 삼평동 지역
비상활주로 2 구역	성남시 구미동 지역 / 용인시 보정리, 신갈리, 동천리, 풍덕천리, 죽전리 지역
비상활주로 3 구역	성남시 구미동 지역 / 용인시 보정리, 마북리, 신갈리, 동천리, 풍덕천리, 죽전리 지역

3.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등 세부내용은 관계행정 기관(시, 구, 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열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청/주소 : 공군 제3368부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사서함 337-1번지

※토지세목 : 지적도 참조

참고자료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기지의 위치·종류 지정 및 구역의 표시)

기지의 위치 및 종류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지의 구역은 관할 부대장이 이를 고시하고 필요한 장소에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군용항공기지법시행령 제2조(기지의 위치 및 종류 지정 등) 제②항

②관할 부대장은 기지구역을 고시한 때에는 지형도(지번, 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말한다)에 그 기지구역의 구분과 각 비행안전구역별로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를 표시하여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군용항공기지구역관리규정 제9조(군용항공기지구역도) 제③항

③관할 부대장은 군용항공기지구역도의 변경시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별표 2와 같이 고시 의뢰하고 그 결과와 군용항공기지구역 총괄도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약도 또는 지적도 사본 및 지적 일람표의 부분을 해당 시·군·구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고 토지이용확인서 발급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1-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정도관리의방법등에 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측정분석기관정도관리의방법등에관한규정 고시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를 위한 평가방법·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도관리”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교육 및 현지지도의 실시,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측정분석기관”이라 함은 영 제22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정기 정도관리”라 함은 측정분석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도관리 실시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4. “임시 정도관리”라 함은 정기 정도관리 외에 임시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제3조 (정도관리 실시계획의 수립 등) 국립환경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측정분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정도관리구분 및 실시시기) ①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 및 임시정도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정도관리는 정도관리 실시계획에 따라 년1회 실시하고 정기정도관리 외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정도관리 대상) 정도관리는 측정분석기관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분석기관 중 영 제22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정도관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

장에게 정도관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한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 (정도관리 평가항목)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평가항목은 분야별로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항목 및 항목수는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분야의 평가항목은 먼지시료채취와 유류 중 황함유량 등으로 한다.
2. 수질환경분야의 평가항목은 일반항목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시안(CN), 페놀 등과 중금속 항목으로 납(Pb), 카드뮴(Cd), 수은(Hg), 크롬(Cr), 비소(As) 등으로 한다.
3. 먹는물분야의 평가항목은 암모니아성 질소(NH3-N), 불소(F), 비소(As), 납(Pb), 수은(Hg), 클로로포름(CHCl3), 벤젠(C6H6), 농약(파라치온) 등으로 한다.
4. 폐기물분야의 평가항목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및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중 3개 항목으로 한다.
5. 토양분야의 평가항목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 토양오염물질 중 3개 항목(유류, 카드뮴 및 납)으로 한다.

제7조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정도관리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분야별로 다음 각호와 같으며,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분야
 - 가. 대기분야 정도관리는 먼지시료채취에 대한 종합적인 정도관리 및 유류 중 황함유량 분석에 대한 정도관리로 구분하여 관련 측정분석기관에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나. 먼지시료채취 정도관리는 굴뚝에서 먼지시료를 채취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준비사항(I), 누출확인시험(II), 시료채취능력(III), 측정결과산정(IV)으로 평가내용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목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다. 먼지시료채취 정도관리의 평가는 각 평가내용별로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기관평가는 각 평가내용별 총점이 95점 이상

인 경우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각 평가 내용별 총점이 70점 이상이며 95점 미만인 경우에는 적합기관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내용별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기관으로 평가한다.

라. 유류 중 황함유량 분석에 대한 정도관리의 평가는 측정분석기관에서 3종류의 정도관리용 표준시료를 수령하여 분석·제출한 결과를 다목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마. 유류 중 황함유량에 대한 측정분석값은 대기 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 병행측정오차 및 반복측정오차 범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관별 평가기준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산출한 정밀도 및 정확도에 의하여 결정하되, 정밀도 및 정확도 값이 모두 ±3% 이하일 경우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정밀도 및 정확도 값이 모두 ±30% 이하이면서 하나 이상이 ±3% 초과한 경우에는 적합기관으로 평가하며, 정밀도 또는 정확도 값 중 하나 이상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달기관으로 평가한다.

(1)정밀도(상대표준편차율) = $\frac{\text{표준편차}}{\text{평균치}} \times 100(\%)$

(2)정확도(상대오차율) = $\frac{\text{검정치} - \text{측정평균치}}{\text{검정치}} \times 100(\%)$

2. 수질환경분야

가. 수질환경분야의 정도관리는 수질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측정분석기관에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수질환경분야 정도관리의 평가는 측정분석기관에서 정도관리용 표준시료를 수령하여 분석·제출한 결과를 다목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 수질환경분야의 항목별 평가는 분석결과와 참값과의 오차율이 ±10% 이하의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하고, 분석결과와 참값과의 오차율이 ±10% 초과에서 ±30%이하의 경우에는 적합으로 평가하며, 분석결과와 참값과의 오차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달로 평가한다. 또한 기관별 평가는 전항목 평균절대오차율이 3%이하이며 미달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전항목 평균절대오차율이

3% 초과에서 30%이하인 경우에는 적합기관으로 평가하며, 전항목 평균절대오차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달기관으로 평가한다.

3. 먹는물분야

가. 먹는물분야 정도관리는 먹는물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측정분석기관에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먹는물분야 정도관리의 평가는 측정분석기관에서 정도관리용 표준시료를 수령하여 분석·제출한 결과를 다목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 먹는물분야의 항목별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기관별 평가는 전항목 평균절대오차율이 3% 이하이며 미달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전항목 평균절대오차율이 3% 초과에서 30% 이하인 경우에는 적합기관으로 평가하며, 전항목 평균절대오차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달기관으로 평가한다.

4. 폐기물분야

가. 폐기물분야 정도관리는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측정분석기관에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폐기물분야 정도관리의 평가는 측정분석기관에서 정도관리용 표준시료를 수령하여 분석·제출한 결과를 다목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 폐기물분야의 항목별 평가는 분석결과와 참값과의 오차율이 ±10% 이하의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하고, 분석결과와 참값과의 오차율이 ±10% 초과에서 ±30% 이하인 경우에는 적합으로 평가하며, 분석결과와 참값과의 오차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달로 평가한다. 또한 기관별 평가는 전항목 평균절대오차율이 3% 이하이며 미달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전항목 평균절대오차율이 3% 초과에서 30% 이하인 경우에는 적합기관으로 평가하며, 전항목 평균절대오차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달기관으로 평가한다.

5. 토양분야

가. 토양분야 정도관리는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측정분석

<p>기관에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p> <p>나. 토양분야 정도관리의 평가는 측정분석기관에서 정도관리를 위한 표준시료를 수령하여 분석·제출한 결과를 다목적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p> <p>다. 토양분야의 항목별 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기관별 평가는 전항목 평균절대오차율이 3% 이하이며 미달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전항목 평균절대오차율이 3% 초과에서 30% 이하인 경우에는 적합기관으로 평가하며, 전항목 평균절대오차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달기관으로 평가한다.</p> <p>제8조 (결과의 제출) ①측정분석기관은 정도관리를 위한 표준시료 등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시료 분석결과 등을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기관으로부터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실시기관에 대하여 검량선 작성 결과 등의 분석</p>	<p>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 (정도관리의 면제) ①정기정도관리 실시결과 2회 연속하여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의 차기 정도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정도관리 면제신고서 마감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분야 분석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분야 정도관리 대상시료를 분석하는 주요기기를 교체하거나 새로 사용한 경우 <p>②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정도관리의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정기정도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정도관리를 면제받고자 하는 측정분석기관은 연구원장에게 당해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정도관리 면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1]

먼지시료채취 평가내용별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 방법		평가기준 (배점)
준비사항 (I)	유	각 항목의 장비, 기기 및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험방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성능이 우수한 경우	20
	부	각 항목의 장비, 기기 및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시험방법 등의 규정에 미흡하거나 성능이 미비 또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누출확인 시험(II)	우수	각 구성부위에서의 누출 및 막힘시험 결과 우수한 경우	25
	적합	각 구성부위에서의 누출 및 막힘시험 결과 양호한 경우	
	미달	각 구성부위를 갖추지 않았거나, 누출 및 막힘시험 결과 불량인 경우 ※누출확인시험 결과 불량인 경우는 현장조치 후 재실시(1회)	
시료채취 능력(III)	우수	각 항목을 시험방법에 준하여 신속정확하게 수행하는 경우	35
	적합	각 항목을 시험방법에 준하여 수행하나, 시료채취 능력이 우수에 못 미치는 경우	
	미달	시험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측정 등이 어려운 경우	
측정결과 산정(IV)	우수	결과산정방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며, 산정과정과 산정값이 정확히 맞는 경우	20
	적합	결과산정방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나 산정과정 및 산정값이 맞는 경우	
	미달	결과산정 과정과 산정값이 모두 틀린 경우	

[별표 2]

먹는물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항 목	평 가		우 수	적 합	미 달
	일반항목	암모니아성 질소		±5%이하	±5%초과 ~ ±15%이하
불소			±5%이하	±5%초과 ~ ±15%이하	±15%초과
중금속	비소		±10%이하	±10%초과 ~ ±30%이하	±30%초과
	납		±10%이하	±10%초과 ~ ±30%이하	±30%초과
	수은		±10%이하	±10%초과 ~ ±30%이하	±30%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농약	클로로포름		±7%이하	±7%초과 ~ ±20%이하	±20%초과
	벤젠		±14%이하	±14%초과 ~ ±40%이하	±40%초과
	파라치온		±15%이하	±15%초과 ~ ±45%이하	±45%초과

비고 : 평가기준은 분석결과와 참값과의 오차율을 말한다.

[별표 3]

토양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유 류	유류 이외 항목
우 수		±14% 이하	±10% 이하
적 합		±14% 초과 ~ ±40% 이하	±10% 초과 ~ ±30% 이하
미 달		±40% 초과	±30% 초과

비고 : 평가기준은 분석결과와 참값과의 오차율을 말한다.

[별 지 1]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정도관리 면제신고서			
1. 참여기관 개요		대 표 자	
기 관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번호		
기 관 구 분	공공립기관(), 민간기관() 기타()		
2. 정도관리 면제 대상분야 (해당분야에 ○표) ① 대기분야(), ② 수질환경분야(), ③ 먹는물분야(), ④ 폐기물분야(), ⑤ 토양분야(), ⑥ 기타분야()			
3. 분석인력 변경유무(해당사항에 ○표) ○ 면제신고서 마감일 이전 1년 이내에 분석인력의 변경유무(유, 무)			
4. 분석기기 변경유무(해당사항에 ○표) ○ 면제신고서 마감일 이전 1년 이내에 주요기기의 교체 또는 새로 사용 유무(유, 무)			
교체 또는 새로 사용한 기기명 :			
측정분석기관정도관리방법변동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관리할 면제받고자 신고합니다.			
신 고 인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연구원장 귀하			

◎국립지리원고시제2001-75호~
제2001-80호
공공측량 성과를 측량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3월 3일
국립지리원장

고시제2001-75호

측량종류	공공측량(거제 장평2지구 조사설계)			
측량계획기관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			
측량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일원			
공공측량성과	성과구분	공공수준점	공공기준점	지형현황도
	수량	2점		1도엽
	정확도	왕복오차 10mm \sqrt{S} 이내 단, S=편도거리(km)	방향각 폐합차 15" + 20" \sqrt{N} 이내 단, N=측점수 좌표폐합차 10cm + 20cm \sqrt{S} 이내 단, S=km임	축척: 1:1,200 평면오차: ± 0.5 mm 이내(도상) 등고선 간격: 주곡선 1m 계곡선 5m 도면 크기: 가로 108cm 세로 50cm
	측량기간	2000년10월~2000년11월		
성과보관장소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			

고시제2001-76호

측량종류	공공측량(전도I.C~신월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측량계획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측량지역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고전면 신월리			
공공측량성과	성과구분	지형현황도		
	수량	3도엽		
	정확도	축척: 1/1,200 평면오차: ± 0.5 mm 이내(도상) 등고선 간격: 주곡선 1m 계곡선 5m 도면 크기: 가로 116cm 세로 55cm		
	측량기간	1999년 5월17일~1999년11월30일		
성과보관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1-77호

측량종류	공공측량(우곡도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측량계획기관	경상북도			
측량지역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월오리 지내			
공공측량성과	성과구분	지형현황도		
	수량	3도엽		
	정확도	축척: 1:1,000 평면오차: ± 0.5 mm 이내(도상) 등고선 간격: 주곡선 1m 계곡선 5m 도면 크기: 가로 100cm 세로 40cm		
	측량기간	2000년11월22일~2001년 1월15일		
성과보관장소	경상북도			

고시제2001-78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연양I.C 연결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측 량 계 획 기 관	울산광역시	
측 량 지 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일원	
공 공 측 량 성 과	성과구분	지 형 현 황 도
	수 량	2도엽
	정 확 도	축 척 : 1 : 1,200 평면오차 : ±0.5mm 이내(도상) 도면 크기 : 가로 27cm 세로 27~35cm
측 량 기 간	2000년 6 월15일~2001년 1 월15일	
성 과 보 관 장 소	울산광역시	

고시제2001-79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진목~장서간 도로확 · 포장공사 실시설계)	
측 량 계 획 기 관	경기도건설본부	
측 량 지 역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이동면 장서리	
공 공 측 량 성 과	성과구분	지 형 현 황 도
	수 량	8도엽
	정 확 도	축 척 : 1 : 1,200 평면오차 : ±0.5mm 이내(도상) 등고선 간격 : 주곡선 1m 계곡선 5m 도면 크기 : 가로 83cm 세로 48cm
측 량 기 간	2000년 9 월19일~2000년10월31일	
성 과 보 관 장 소	경기도건설본부	

고시제2001-80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봉화~법전<법전축>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측 량 계 획 기 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측 량 지 역	경북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소지리	
공 공 측 량 성 과	성과구분	지 형 현 황 도
	수 량	5도엽
	정 확 도	축 척 : 1 : 1,200 평면오차 : ±0.5mm 이내(도상) 등고선 간격 : 주곡선 1m 계곡선 5m 도면 크기 : 가로 103cm 세로 52cm
측 량 기 간	1999년11월 1 일~2000년 4 월30일	
성 과 보 관 장 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립지리원고시제2001-81호

측량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측량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3월 3일

국립지리원장

1. 측량의 종류 : 수준측량
2. 측량의 정확도 : 2등 $5.0\text{mm}\sqrt{S}$
[S=편도거리(km)]
3. 측량실시 시기 : 2000년
4. 측량성과 보관장소 : 국립지리원
5. 측량표지(수준점) 설치현황 : 붙임참조

순번	도업명	점 의 번 호	점 의 소 재 지	관측년도	표석상태	비고
1	평 택	12-7-17-1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192-1 (한국가스공사 평택관리소)	2000	재 설	2등
2	용 인	12-7-17-2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643-1(호덕초등학교)	2000	재 설	2등
3	용 인	12-7-17-3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442-15(버스정류장)	2000	재 설	2등
4	용 인	12-7-17-4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29-1(오성면사무소)	2000	재 설	2등
5	남 양	12-7-17-5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금곡리 305-1 (안중농협미곡처리장)	2000	재 설	2등
6	아 산	12-7-0-0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산77-4	2000	재 설	2등
7	아 산	12-7-18-1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용성리 산44-4(오뚜기라면)	2000	재 설	2등
8	남 양	12-7-18-2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293-4 (청북면 보건지소)	2000	재 설	2등
9	남 양	12-7-18-3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렘리 483	2000	재 설	2등
10	남 양	12-7-18-4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900	2000	재 설	2등
11	남 양	12-8-0-0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287-1(향남면 사무소)	2000	재 설	2등
12	남 양	12-8-21-1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구장리 530-1(팔탄면 사무소)	2000	재 설	2등
13	남 양	12-8-21-2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하저리 893-5(한미약품공업)	2000	재 설	2등
14	남 양	12-8-21-3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무송리 212-12	2000	재 설	2등
15	남 양	12-10-0-0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아기사랑 어린이집)	2000	완 전	2등
16	남 양	12-10-25-1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 113(남양휴게소)	2000	재 설	2등
17	남 양	12-10-25-2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삼화리 537(비봉초등학교)	2000	재 설	2등
18	안 양	12-10-25-3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송라리 585(송라초등학교)	2000	재 설	2등
19	안 양	12-11-26-1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54-2(고잔역)	2000	재 설	2등
20	안 양	12-11-26-2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337-1(안산역)	2000	재 설	2등
21	안 양	12-11-26-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18-2(시화초등학교)	2000	재 설	2등
22	인 천	12-11-26-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27-3(냉정초등학교)	2000	재 설	2등
23	인 천	12-11-26-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26(고잔동 사무소)	2000	재 설	2등
24	인 천	12-11-2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학동 358(선학초등학교)	2000	재 설	2등
25	인 천	12-11-2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27-1(송도초등학교)	2000	재 설	2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57호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3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 감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
- 성 명 : 농업기반공사 구미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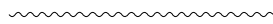
○점용면적 및 위치

- 면 적 : 108㎡
- 위 치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26번지 일원

○점용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배수장 토출조 설치
- 개 요 : 토출조 구체설치(L-41.5m.2×2×1면)

○점용기간 : 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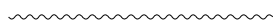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용계동 35-3번지의 2필지내
3. 점용목적 : 오수관 매설(정읍병원~정읍천간)
4. 점용면적 : 204㎡
5. 공사개요 : 오수관(Ø450mm) L=160m 매설
6. 점용기간 : 2001년 2 월23일~영구
7. 피허가자 : 전북 정읍시 수성동 440-1 정읍시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20호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
 -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
 - 대표자의 성명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775
 - 점용면적 : 3,01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의 목적 : 유수인용(공업용수) 및 공작물 설치

○점용개요 : 양수장 1동

취수관 1식

집수정 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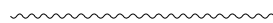
용수로 L=268m

5. 유수 사용량 : 0.303m³/sec(2,600m³/일)

6. 점용기간

○당 초 : 1987년 6 월19일~1991년12월31일

○변 경 : 1992년 1 월 1 일~2001년12월31일 (10년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21호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
 -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
 - 대표자의 성명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51
 - 점용면적 : 1,61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의 목적 : 유수인용(공업용수) 및 공작물 설치
 - 점용개요 : 도수로 L=521m
 - 압 거(2@20×1.5) L=53m
 - 파이프(2@1,200mm) L=462m
 - 맨 홀(2.0×4.0) 3개소
5. 유수 사용량 : 1.532m³/sec(132,000m³/일)
6. 점용기간
 - 당 초 : 1987년 2 월23일~1996년12월31일
 - 변 경 : 1997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10년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22호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
 -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
 - 대표자의 성명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255-2
 - 점용면적 : 1.0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의 목적 : 유수인용(공업용수) 및 공작물 설치
 - 점용개요 : 취수시설 1식
5. 유수 사용량 : 0.793m³/sec(68,500m³/일)
6. 점용기간
 - 당 초 : 1991년 7 월 1 일~1999년 6 월30일
 - 변 경 : 1999년 7 월 1 일~2009년 6 월30일 (10년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23호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
 -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
 - 대표자의 성명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 경북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7-1
 - 점용면적 : 9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의 목적 : 유수인용(공업용수) 및 공작물 설치

○점용개요 : 취수시설 1식

5. 유수 사용량 : 0.95m³/sec(82,000m³/일)

6. 점용기간

○당 초 : 1991년 7 월 1 일~1999년 6 월30일

○변 경 : 1999년 7 월 1 일~2009년 6 월30일 (10년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24호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
 -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
 - 대표자의 성명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 경북 구미시 도개면 가산리 1017-1
 - 점용면적 : 12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의 목적 : 유수인용(공업용수) 및 공작물 설치
 - 점용개요 : 취수시설 1식
5. 유수 사용량 : 0.205m³/sec(17,700m³/일)
6. 점용기간
 - 당 초 : 1991년 7 월 1 일~1999년 6 월30일
 - 변 경 : 1999년 7 월 1 일~2009년 6 월30일 (10년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25호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
-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
- 대표자의 성명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1017
- 점용면적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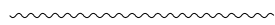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의 목적 : 우수인용(공업용수) 및 공작물 설치
- 점용개요 : 취수시설 1식

5. 우수 사용량 : 0.696㎡/sec(60,000㎡/일)

6. 점용기간

- 당 초 : 1991년 7 월 1 일~1999년 6 월30일
- 변 경 : 1999년 7 월 1 일~2009년 6 월30일
(10년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26호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우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
-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
- 대표자의 성명 : 농업기반공사구미지부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산16-1
- 점용면적 : 93.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의 목적 : 우수인용(공업용수) 및 공작물 설치
- 점용개요 : 취수시설 1식

5. 우수 사용량 : 1.0995㎡/sec(95,000㎡/일)

6. 점용기간

- 당 초 : 1991년 7 월 1 일~1999년 6 월30일
- 변 경 : 1999년 7 월 1 일~2009년 6 월30일
(10년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27호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우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 주 소 : 경북 구미시 양호동 96
- 대표자의 성명 : 장경희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 경북 구미시 양호동 96
- 점용면적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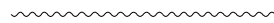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의 목적 : 우수인용(공업용수) 및 공작물 설치
- 점용개요 : 취수시설 1식

5. 우수 사용량 : 0.022㎡/sec(1,900㎡/일)

6. 점용기간

- 당 초 : 1991년 6 월30일~1999년 6 월30일
- 변 경 : 1999년 7 월 1 일~2009년 6 월30일
(10년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1-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증개정고시

“제8조(검사결과 확인전 신고필증교부대상검사등)” 제1항의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로, 동항제4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무작위표본검사”로, 동항 제5호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로 한다.

“제11조(표시기준 · 허위표시등의 확인등)” 제1항제2호의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2호”를 “시행령 제18조의2 제2호”로 한다.

“제12조(부적합한 수입축산물등의 처리)” 제3항의 “수입선박 또는 항공기를 기준”을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감천항
2. 공사명칭 : 감천항 동원산업부두내 항만근로자 후생시설
3.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645-9번지 지선
4. 공사규모
○건물 1동(연면적 : 987,60㎡)
5. 공사금액 : 1,150백만원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월
7. 사업시행자 : (주)포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 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24호

항만시설지정·고시

항만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거 다음시설을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설명 : 항만법 제2조6호 “가”의 기본시설 및 “나”의 기능시설
2. 목 적 : 방파제 및 안벽시설

3. 항만시설의 표시

소 재 지	항 만 시 설		적 비 고
	시 설 명	면 적	
부산 남구 용호동 신	방파제	1,840m	
선대 준설토 투기장	안 벽	1.022m	
	호 안	88.5m	
	부지조성	528,59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부산항
2. 공사명칭 : 해군부두 공사
3.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신선대 준설토 투기장
4. 공사 규모
○안벽 : 1,022M, 방파제 : 1,840M, 호안 : 88.5M
○부지조성 1식(항만시설 : 393,650㎡, 지원시설 : 134,946㎡)
5. 공사금액 : 2,678억원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년
7. 사업시행자 : 해군참모총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위치)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 및 구조	변 경 년월일	기 사	소유자
				광학	명목				
변경전	한국통신 A호부표	N 37° 10' 13"	-	-	-	황 원추형	2001. 2.23	특수표지 (헤저 케이블 표지)	한국통신 강릉통신망 운용국
변경후		E 129° 22' 14"							
변경전	한국통신 B호등부표	N 37° 10' 10"	Fl(2)Y 5s	8	6	황 망대형			
변경후		E 129° 21' 59"							
		N 37° 10' 06"							
		E 129° 22' 15"							
		N 37° 10' 04"							
		E 129° 21'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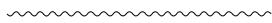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6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1. 허가번호 : 2001-4
- 2. 허가연월일 : 2001년 2 월26일
- 3. 점 · 사용의 목적 : 조선용 선가대 설치
- 4. 점 · 사용의 장소 : 전남 목포시 서산동 26-3, 26-4번지 지선공유수면
- 5. 점 · 사용의 목적 및 기간
 - 면 적 : 4,866㎡
 - 기 간 : 2001년 3 월 3 일~2002년 3 월 2 일 (1년간)
- 6. 허가받은자의 주소, 성명
 - 주 소 : 전남 목포시 서산동 23-9
 - 성 명 : 한일조선(주) 강정섭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9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점 · 사용허가 하였기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1. 허가번호 : 2001-5호
- 2. 허가연월일 : 2001년 2 월26일
- 3. 점 · 사용목적 : 선가대
- 4. 점 · 사용장소 : 전남 여수시 중화동 279-10번지 선
- 5. 점 · 사용면적 및 기간
 - 면 적 : 1,730㎡
 - 점용기간 : 2001년 1 월27일~2005년 1 월26일 (4년간)
- 6. 허가 받은자의 성명 · 주소
 - 성 명 : 평화조선 김명찬
 - 주 소 : 여수시 중화동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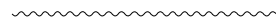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0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점 · 사용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1. 허가번호 : 2001-6호
- 2. 허가연월일 : 2001년 2 월26일
- 3. 점 · 사용목적 : 쇄빙탑 및 송빙교
- 4. 점 · 사용장소 : 전남 여수시 남산동 196-1번 지선
- 5. 점 · 사용면적 및 기간
 - 면 적 : 633㎡
 - 점용기간 : 2001년 3 월26일~2005년 3 월25일 (4년간)
- 6. 허가 받은자의 성명 · 주소
 - 성 명 : 동방산업(주) 박후근
 - 주 소 : 여수시 남산동 196-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1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점 · 사용허가 하였기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1. 허가번호 : 2001-7호
- 2. 허가연월일 : 2001년 2 월26일
- 3. 점 · 사용목적 : 돌제 및 크레인
- 4. 점 · 사용장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89-4번지선
- 5. 점 · 사용면적 및 기간
 - 면 적 : 130㎡
 - 점용기간 : 2001년 3 월18일~2005년 3 월17일 (4년간)
- 6. 허가 받은자의 성명 · 주소
 - 성 명 : 신영조선 김영민
 - 주 소 : 여수시 남산동 789-10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1-21호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한 재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문화관광부장관

1. 허가번호 : 문화관광부 제254호
2. 허가년월일 : 2001년 2월23일
3. 법인명칭 : 재단법인 언어문화연구원
4. 대표자의 성명 : 이기문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86-1 다이아몬드빌딩 604호

6. 설립 목적 : 국어 교육의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활동, 국어 정보화 사업, 고전 발굴 및 대중화 사업, 국어 능력의 평가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1-4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거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건설교통부장관

공 장 인 증			인 증 대 상			
번	호 분 야 등 급	회 사 명	공 장 소 재 지	공장인증유효기간		
제2001-55호	교 량 1	동부건설(주)	충남 당진 송악 중흥 362-8	공고일부터 3년		
제2001-56호	건 축 1	백 호 익				
제2000-57호	교 량 1	삼부토건(주)	경기도 안산 목내 457	"		
		정 진 우				

◎문화재청공고제2001-5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3호 「학봉리도요지」보호구역 추가지정 등 2건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문화재청장

1.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가. 예고내용

(면적단위 : m²)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추가지정예고면적	기 지정면적	계
사적 제333호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12 일원	6,256	4,511	10,767
학봉리도요지			
사적 제308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734	1,249	26,995	28,244
장도청해진유적			

나. 예고사유

- 학봉리도요지 : 철화분청의 대표적 생산지로 금번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유적이 밀집된 지역의 상단부로 문화재(사적)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장도청해진유적 : 사적 지정시 누락된 지역과 지정후 매입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사적)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기념물과(사적2담당)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전 화 : 042-481-4872, 4871

○FAX : 042-481-4691

○주 소 : 우편번호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대전정부청사1동 1002호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기념물과 사적2계

6.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목록 : 별항

문화재(사적)보호구역추가지정예고목록

- 문화재명 : 사적 제333호 학봉리도요지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 추가지정예고면적 : 6,256㎡

지번	지목	면적(㎡)	지정예고면적(㎡)	토지소유자
산22-6	임야	6,256	6,256	대전 서구 삼천동 986 이홍규외 1인

- 문화재명 : 사적 제308호 장도청해진유적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 추가지정예고면적 : 1,381㎡

지번	지목	면적(㎡)	지정예고면적(㎡)	토지소유자
151-2	전	1,319	1,187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8-2 최옥덕외 4인
151-6	대지	62	62	완 도 군
계		1,381	1,24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44호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측량업 등록(신규)을 필하였기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등록번호 : 일반 02-2948
- 상 호 : 성원토목측량설계공사
- 대표자 : 김기웅()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34-14
- 등록일 : 200년 2월26일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0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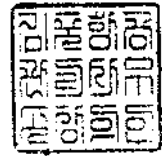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및 비행점검소장의 직인을 조각하여 등록하였기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1년 3월 1일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의인



비행점검소장의인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1-5호

수로조사업등록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로조사업을 등록하였기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 등록번호 : 제6호
- 상 호 : (주)세계해양기술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
다성빌딩 6층 605호

○대표자 : 김동근

○업의 종류 : 수로조사업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1-15호

권고재결공고

2001년 1월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광신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1-8호)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이태원

1935년 1월12일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518-4 한일비치맨션 902호

귀하는 광신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사를 승선, 배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자신이 선장의 업무를 수

행한 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2000년 6월27일 06시 00분경 성산포항 서방파제로부터 진방위 약 310도, 약 670미터 거리의 해상에서 광신호가 수중암초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해기사 면허가 있는 선장을 고용하고서도 선장의 업무 대신 기관장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 영상을 판독하여 선위를 측정할 능력도 없는 무면허자인 자신이 직접 광신호를 무리하게 조선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해기사에 의하여 선박이 운항되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1-31호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서울체신청장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설립목적
(사단법인) 무선인터넷 단말기협회	서초구 서초2동 1376 - 1 외교센타405호	강승훈	서울청 2001-41	2001-02-02	국내 PDA산업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공동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정책지원교류를 통해 PDA 기술표준화를 위한 공동개발에 노력함
(사단법인) 한국P2P협회	강남구 삼성동 35 - 6 종원빌딩 2층	최용관	서울청 2001-42	2001-02-08	P2P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원의 권익보호, 공동사업추진과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정책지원, 교류를 통해 P2P기술표준화 등을 협력함
(사단법인) 한국디지털 콘텐츠포럼	서초구 양재동 275 - 6 상호빌딩 1004호	이용규	서울청 2001-43	2001-02-06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표준화 활동 및 학술정보보급과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간 조정기능 등을 수행하여 양질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을 통한 국민 이익증진을 도모함
(사단법인) 인터넷기업가치 평가포럼	강남구 삼성동 159 - 1 트레이드타워 3005호	윤창번	서울청 2001-44	2001-02-16	인터넷콘텐츠와 같은 무형재산에 대하여 기업의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이바지함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 3 흥우빌딩 1014호	곽치영	서울청 2001-45	2001-02-26	종합적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 보조기술 분야의 산업발전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부산체신청공고제2001-25호

정보통신공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부산체신청장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비 고

120511	(주)한국케이블TV울산방송 육 창 응	울산 남구 신정1동 700-4	별종공사업에서변경 부산제326호
120512	진영텔레콤 정 진 영	울산 남구 신정3동 504-8	신 규

◎전북체신청공고제2001-13호

정보통신공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1년 3 월 3 일

전북체신청장

- 상 호 : (주)기가텔레콤
- 대표자 : 이진노
- 영업소소재지 : 전북 익산시 창인동 1가 223-17
- 등록번호 : 160156
- 등록일자 : 2001년 2 월26일
- 비 고 : 신규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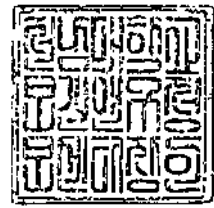
◎전남대학교공고제2001-2호

전남대학교 소속 보건연구정보센터에서 신규 사용
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전남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일자 : 2001년 2 월21일
- 전남대학교보건연구정보센터장인



지 방 자 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52호

염리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1. 건설부고시 제1994-447호('94.11.21.)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86호('96. 7. 4.)로 사
업계획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6호('97.
2.1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79호('97. 9. 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60호('98. 3. 3.) 로 구역변
경지정된 염리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염리제1주택재개발사업

나.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마포구 염리동 55-33 일대

○면 적

-기 정 : 30,130㎡

-변 경 : 30,130㎡

-증 감 : 0

○비 고 : 현황측량 결과에 의한 일부경미한 도로
선형 변경 및 택지경계조정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 감	변 경 전	변 경 후	비	
도시계획 계	30,130	30,130		100	100		변 동 없 음
용도지역 일반주거 택 지 소 계	30,130	30,130		100	100		변 동 없 음
택 지 I	27,199	27,218	증)19	90.27	90.34		
택 지 II	22,949	22,868	감)81	76.17	75.90		
택 지 III	2,305	2,374	증)69	7.65	7.88		
택 지 IV	1,309	1,336	증)27	4.34	4.44		
택 지 V	463	465	증)2	1.54	1.54		
택 지 VI	173	175	증)2	0.57	0.58		
공공시설 소 계	2,931	2,912	감)19	9.73	9.66		
도 로	2,931	2,912	감)19	9.73	9.66		연리동45-57(4m ²) 가각전제 포함

라.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정비계획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사용형태	연장(m)	위 치			면적(m ²)
	노형	세분류	번호	폭원(m)			기	점	종	
총계										2,912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일반도로	80	연리동 36-119	연리동 36-12			118
" "	3	2	6	" "	147	연리동 80-4	연리동 103-2			1,134
" "	3	3	6	" "	87	연리동 36-105	연리동 45-44			588
" "	3	4	6	" "	93	연리동 36-119	연리동 48-17			562
" "	3	5	6	" "	13	연리동 64-2	연리동 64-6			41
" "	1	1	10	" "	153	연리동 120	연리동 48-11			465

○비 고 : 연리동 45-57(4m²) 가각전제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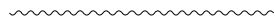
마. 건축시설계획

구 분	획 지		건 폐 율(%)	용 적 율(%)	층수(높이 : m)	용 도 구 분	비 고
	구 분	면 적(m ²)					
변경전	택 지 I	22,949	25%이하	270%이하	17층이하 65.6이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택 지 II	2,305	30%이하	230%이하	15층이하 45.0이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임대아파트
	택 지 III	1,309	건축법규 등 관계법규의 정한 바에 의함				보 류 지
	택 지 IV	463					보 류 지
	택 지 V	173					보 류 지
변경후	택 지 I	22,868	25%이하	270%이하	17층이하 65.6이하	아파트 및 부대복리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택 지 II	2,374	30%이하	230%이하	15층이하 45.0이하	아파트 및 부대복리	임대아파트
	택 지 III	1,336	건축법규 등 관계법규의 정한 바에 의함				보 류 지
	택 지 IV	465					보 류 지
	택 지 V	175					보 류 지

바. 기타 변경없음

사. 관계도면 : 생략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개발과(☎3707-8234), 마포구 도시개발과(☎330-2620~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01-45호

건설부고시 제697호('90.10.19.)로 지구지정 및 부산광역시고시 제1995-196호('95. 7.21.)로 지구 지정 변경되어 사업시행중인 부산광역시 수정1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변경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구청(허가민원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해당지구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3월 3일

부산광역시장

○지구명 : 수정1 주거 환경개선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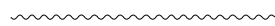
○위 치 : 부산 동구 수정동 1048 일원

○면 적

-기 정 : 8,671.1㎡

-변 경 : 8,859㎡

-증 감 : 증)187.9㎡



◎부산광역시고시제2001-46호

1. 부산광역시반여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사업기간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택지사업부 및 해운대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3월 3일

부산광역시장

택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부산 반여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자와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 부산광역시장 안상영

나. 주 소 :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000

3. 택지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4.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 정 : 1996년 1월29일~2001년 6월30일

○변 경 : 1996년 1월29일~2001년12월31일

5. 택지개발사업 시행지 위치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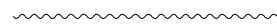
가. 위 치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75-2 일원

나. 면 적 : A=318,278㎡

6.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8. 관계도면 : 변경없음



◎경기도고시제2001-33호

경기도고시 제2000-241호(2000.10.16.)로 수립 고시한 흑천 하천정비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3월 3일

경기도지사

1. 공사명 : 흑천개수공사

2. 위 치 : 양평군 양평읍·개군면·용문면·지제면·단월면·청운면 일원

3. 공사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남한강 제1지류인 흑천과 흑천 지류인 연수천의 개수공사를 시행하여 제방과 취수문 및 배수문을 보강, 배후 농경지 140.95ha 가옥 13동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당 초

-축제공 : 14.62km

-호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안브력 : 12,436m² · 돌망태 : 101,513m² · 자연석 : 9,205m² · 석 축 : 3,589 m² -배수공 : 배수문 4개소, 배수통관 39개소 -구조물공 : 취수문 3개소, 용수관 4개소, BOX 2개소 -부체도로 : 11개소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공 : 15.94km -호안공 · 호안브력 : 12,535m² · 돌망태 : 105,629m² · 자연석 : 9,205m² · 석 축 : 5,64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수공 : 배수문 4개소, 배수통관 41개소 -구조물공 : 취수문 3개소, 용수관 4개소, BOX 3개소 -부체도로 : 11개소 <p>4. 사업 시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 ○명 칭 : 경기도지사 <p>5. 공사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초 -착수일 : 1997년12월 5 일 -준공예정일 : 2000년12월31일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착수일 : 1997년12월 5 일 -준공예정일 : 2001년 4 월15일 <p>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내역 : 별항</p>
--	---

토 지 조 서

○공사명 : 흑천개수공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주 소	소 성	명
소재지 : 단월면 삼가리								
25-6	하	1,150	25-9	하	40	서울 성북구 하월곡2동 96-14	최 승 만	
26-3	"	638	26-5	"	569	"	"	
28-4	답	300	28-8	답	344	단월면 삼가리 66	이희경외 6인	
28-6	"	1,636	28-9	"	1,251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52	양 경 수	
33-1	하	204	33-1	하	229	서울 성북구 하월곡2동 96-14	최 승 만	
33	"	602	33-2	"	94	"	"	
64-1	답	946	64-2	답	255	단월면 삼가리 214	설 정 숙	
63-1	"	1,005	63-2	"	431	단월면 삼가리 3	손 창 봉	
75	"	342	75-2	"	257	"	"	
61-2	대	283	61-8	대	59	서울 은평구 응암동 73-10	최 권 부	
76-3	답	477	61-7	답	25	단월면 삼가리 99	이 석 순	
77-1	하	128	77-2	하	64	경성부 봉내정 4정목 214	정희택 외1인	
76-2	답	141	76-6	답	198	단월면 삼가리 99	이 석 순	
61-5	"	177	61-9	"	137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30	최 관 부	
소재지 : 단월면 삼가리			소재지 : 용문면 광탄리					
529-5	답	182	529-5	답	182	지제면 지평리 514-1	이 선 복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주 소	성 명	성 명
529-6	답	74	529-6	답	74	용문면 광탄리 74		윤 영 로
529-4	"	633	529-4	"	633	용문면 다문리 305-16		이 용 하
517-8	"	29	517-8	"	29	용문면 광탄리 149		김 영 자
517-9	"	9	517-9	"	9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대진 95		남 원 양 씨 삼 화 종 중
517-10	"	8	517-10	"	8	용문면 광탄리 148		한 병 원
517-11	"	145	517-11	"	145	용문면 광탄리 123		남원양씨종사랑 공파 광탄종중
517-12	"	505	517-12	"	505	용문면 광탄리 74		이 관 호
508-11	"	188	508-11	"	188	용문면 광탄리 773		진 옥 순
508-12	"	69	508-12	"	69	용문면 광탄리 746		박 용 수
508-13	"	465	508-13	"	465	용문면 광탄리 74		김 형 식
513-2	"	293	513-2	"	293	용문면 광탄리 415		남원양씨곡산 공파 광탄종중
513-3	"	653	513-3	"	653	용문면 덕촌리 118		정 동 선
498-8	"	14	498-8	"	14	용문면 광탄리 74		김 형 식
498-9	"	628	498-9	"	628	용문면 광탄리 73		김 복 인
498-10	"	180	498-10	"	180	용문면 광탄리 74		김영옥외 4인
498-11	"	997	498-11	"	997	용문면 금곡리 122		이 남 수
497-9	"	374	497-9	"	374	용문면 광탄리 74		김형식의외 4인
479-7	"	201	479-7	"	201	용문면 금곡리 산25		김 경 옥
479-8	"	74	479-8	"	74	용문면 금곡리 산25		"
76-8	"	70	76-8	"	70	용문면 광탄리 74		윤 영 로
76-9	"	15	76-9	"	15	용문면 광탄리 74		"
559-1	하	1,174	559-1	하	1,174	용문면 금곡리 264		민 용 규
561-1	답	165	561-1	답	165	용문면 금곡리 245		서 성 재
556-5	"	261	556-5	"	261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 80		최 영 준
523-3	하	2,489	523-3	하	2,489	용문면 광탄리 85		양 주 익
525-4	"	347	525-4	"	347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한신아파트 105동 802호		안 대 성
542	"	2,017	542	"	2,017	대전 중구 선화동 77-20		양 순 모 (강원옥, 이호경 저당권설정)
524	"	1,048	524	"	1,048	상 등		상 등
543	"	1,626	543	"	1,626	"		"
544-2	"	767	544-2	"	767	용문면 광탄리 544-2		안 명 호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주 소	성 명	성 명
544-3	하	549	544-3	하	549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영진연립 201호	고 용 진	고 용 진
545-1	"	893	545-1	"	89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익아파트 7동 1001호	성 영 진	성 영 진
546-1	답	185	546-1	답	185	용문면 광탄리 73	김 복 인	김 복 인
523-4	하	321	523-4	하	32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한신아파트 105동 802호	안 대 성	안 대 성
557-2	답	245	557-2	답	245	용문면 금곡리 271	최 완 우	최 완 우
77-1	묘	43	77-1	묘	43	용문면 광탄리 113	양 건 석	양 건 석
525-2	하	823	525-2	하	823	용문면 광탄리 3	최 봉 석	최 봉 석
소재지 : 용문면 금곡리			소재지 : 용문면 광탄리					
525-1	하	658	525-1	하	658	용문면 광탄리	양 재 목	양 재 목
소재지 : 용문면 금곡리			소재지 : 용문면 금곡리					
221-1	전	1,402	211-1	전	1,402	성남 중원 은행동 대우빌라 302호	서 건 택	서 건 택
294-1	"	294	294-1	"	33	용문면 다문리 704	김 종 기	김 종 기
312-4	"	1,814	312-8	"	2,310	양평읍 양근리 333-10	양 방 영	양 방 영
281-23	임	964	281-23	임	964×1/3	용문면 마룡리 372	김 민 수	김 민 수
281-23	"	964	281-23	"	964×1/3	용문면 마룡리 산17	박 기 성	박 기 성
287-1	"	528	287-1	"	528×1/3	용문면 마룡리 372	김 민 수	김 민 수
287-1	"	528	287-1	"	528×1/3	용문면 마룡리 산17	박 기 성	박 기 성
287-14	"	259	287-14	"	259×1/3	용문면 마룡리 372	김 민 수	김 민 수
287-14	"	259	287-14	"	259×1/3	용문면 마룡리 산17	박 기 성	박 기 성
287-13	"	339	287-13	"	339×1/3	용문면 마룡리 372	김 민 수	김 민 수
287-13	"	339	287-13	"	339×1/3	용문면 마룡리 산17	박 기 성	박 기 성
289-1	"	707	289-1	"	707	용문면 마룡리 372	김민수의 2인	김민수의 2인
289-18	"	319	289-18	"	319	"	"	"
289-2	"	272	289-2	"	272×1/3	용문면 마룡리 372	김 민 수	김 민 수
289-2	"	272	289-2	"	272×1/3	용문면 마룡리 산17	박 기 성	박 기 성
289-14	"	962	289-14	"	962×1/3	용문면 마룡리 372	김 민 수	김 민 수
289-14	"	962	289-14	"	962×1/3	용문면 마룡리 산17	박 기 성	박 기 성
289-17	"	1,078	289-17	"	1,121	용문면 마룡리 372	김민수의 2인	김민수의 2인
281-9	"	926	281-9	"	926×1/3	용문면 마룡리 372	김 민 수	김 민 수
281-9	"	926	281-9	"	926×1/3	용문면 마룡리 산17	박 기 성	박 기 성
278-10	"	249	278-10	"	249×1/3	용문면 마룡리 372	김 민 수	김 민 수
278-10	"	249	278-10	"	249×1/3	용문면 마룡리 산17	박 기 성	박 기 성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주 소	소 성	명
279-3	임	188	279-3	임	188×1/3	용문면 마룡리 372		김 민 수
279-3	"	188	279-3	"	188×1/3	용문면 마룡리 산17		박 기 성
279-7	"	133	279-7	"	133×1/3	용문면 마룡리 372		김 민 수
279-7	"	133	279-7	"	133×1/3	용문면 마룡리 산17		박 기 성
소재지 : 용문면 마룡리			소재지 : 용문면 마룡리					
81-6	전	117	81-7	전	117	용문면 마룡리 101		양 삼 석
119-2	하	361	119-1	하	361	용문면 마룡리 118		이 상 옥
122-2	답	18	122-2	답	188	용문면 마룡리 339		윤 희 섭
123-2	"	169	124-1	"	3	"		"
소재지 : 용문면 다문리			소재지 : 용문면 다문리					
534-3	전	200	534-3	전	308	용문면 다문리 565		장 춘 식
537	"	1,688	537-4	"	89	"		최 흥 석
876-4	하	2,284	876-4	하	1,744	성남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 103동 606호		조 정 숙
530-12	전	170	530-12	전	206	용문면 다문리 524-3		최 우 군
869	"	75	869-1	"	155	용문면 다문리 845		김 계 순
867-1	하	193	867-2	하	191	용문면 다문리 706		박 재 응
868	전	2,106	869-1	전	155	"		"
843	답	552	843-1	답	548	용문면 다문리 727		정 인 영
844	전	301	844-1	전	136	용문면 다문리 704		정 연 행
산12	임	40	산12-2	임	62	용문면 마룡리 306-4		김 사 응
산11-2	"	63	산11-4	"	40	용문면 다문리 706		박 재 응
소재지 : 용문면 삼성리			소재지 : 용문면 삼성리					
119	잡	262	119-6	잡	4	용문면 다문리 105		김 운 배
118-1	전	390	118-1	전	581	양평읍 양근리 그린아파트 201동 1306호		안 종 혁
소재지 : 양평읍 원덕리			소재지 : 양평읍 원덕리					
358-6	답	83	358-6	답	176	양평읍 봉성리 290		이 세 환
354-3	"	75	354-3	"	185	양평읍 원덕리 378		하 인 중
356-11	"	195	356-13	"	378	"		"
352-1	"	921	352-1	"	1,038	양평읍 원덕1리		새마을 부녀회
361-2	"	186	361-2	"	262	양평읍 원덕리 378		이 병 철
361-4	"	203	361-3	"	249	"		"
소재지 : 개군면 석장리			소재지 : 개군면 석장리					
125-7	답	69	125-7	답	1,077	개군면 석장리 163-2		김 연 수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주 소	성 명	명
135	답	453	135-1	답	401	개군면 석장리 157	김 간	란
132-63	하	0	132-63	하	393	개군면 석장리 167	최 도	영
531-2	답	364	531-2	답	1,415	개군면 석장리 105	김 도	경
531	"	185	531-3	"	534	양평읍 회현리 556-1	신 암	전
130-15	잡	116	130-16	잡	116	개군면 석장리 130-15	김 순	덕
132-60	전	21	132-61	전	21	성남 분당 분당동 152-17 201호	송 찬	범

◎(서울)서초구고시제2001-9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지형도면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5호(2001. 1.27.)로 서초구 서초동 산160-51외 3개소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형도

면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570-6385~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3월 3일

서 초 구 청 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조서

변 경 내 역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m ²)	비 고
서초동 산160-51 일대	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574	
우면동 92-6 일대	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800	
서초동 1649-16 일대	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840	7층 이하
방배동 2634 일대	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102	방배2주택 재개발구역

나. 관계도면 : 생략(서초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서울)성북구고시제2001-13호

길음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에 따른지형도면승인

1. 건설부고시 제1994-116호(1994. 4.18.)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508호(1997.11. 4.), 같은고시 제1998-256호(1998. 7.21.), 같은고시 제2000-1호(2000. 1.10.), 같은고시 제2000-47호(2000. 3.13.)와 같은고시 제2001-40호(2001. 2. 8.)로 구역변경지정 결정된 성북구 길음1동 547번지 일대 “길음제1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개발과(전화 : 920-37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3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길음제1주택재개발사업

나. 재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 성북구 길음동 547 일대

(2) 면 적

- 변경전 : 48,012m²

- 변경후 : 48,406m²

- 증·감 : 증 394m²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	면적(m ²)			비율(%)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비	
용도지역 일반주거	48,012	48,406	증 394	100	100		
택지 및 계	48,012	48,406	증 394	100	100		
공공시설 택지 1	45,512	45,810	증 298	94.79	94.64	분양주택	
도로	2,500	2,596	증 96	5.21	5.36	8m도시계획 도로	

라. 공공시설(도로)의 위치 및 규모

(1)도로결정 내용

결정구분	규모				위치					
	노형	세분류	번호	폭원(m)	기능	사용형태	연장(m)	기점	종점	점
당초	소로	2	1	8	국지도로	일반도로	230.0	길음동 559-13	길음동 549-106	
"	"	2	2	8	"	"	93.0	길음동 549-106	길음동 549-41	
변경	"	2	2	8	"	"	113.0	길음동 549-106	길음동 549-54	

마. 관계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부산)남구고시제2001-6호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3월 3일

남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도 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비고
신설	소로	3	36	4	국지도로	75m	문현동 232	문현동 231-17		일반국도	농심자동차운전학원	
기정	"	2	7	8	"	186m	문현동 228-1	문현동 195-26		"	변영로 일부구간폐지(L=56m)	
변경	"	2	7	8	"	130m	문현동 231-7	문현동 195-26		"	"	

○수도(배수지)

-구 분 : 신설

-도면표시번호 : 1

-시설명 : 수도(배수지)

-위 치 : 남구 감만동 산44 일원

-면 적 : 3,92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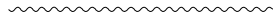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다.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소로 2-7호선

○변경후 도로명 : 소로 2-7호선

- 변경내용 : 일부구간폐지(L=56m)
- 변경사유 : 당초 도시고속도로(번영로)를 일부횡단토록 계획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해당 구간 폐지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고시제2001-1호

1. 김제시고시 제2000-48호(2000. 4. 7.) 로 시설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김제도시계획시설(검산초등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학교)사업 시행계획을 협의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001년 3 월 3 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김제시 검산동 912-21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 칭 : 검산초등학교 신축공사
-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북 김제시 검산동 912-21
 - 성 명 :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 라. 사업시행자의 규모
- 부 지 : 13,915㎡
 - 건 물 : 7,830.18㎡(지하1층, 지상3층)
- 마. 사업시행기간 : 2001년 3 월 ~ 2002년 2 월28일

바.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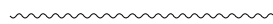
소재지 : 김제시 검산동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912-21		대		12,997			12,997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01-26		전라북도교육감
913-4		전		226			226		"		"
1037		도		2,141.7			692				국(김 제 시)
계							13,915				

사. 건물조서

- 시설명 : 교사동
- 금회시설면적

 - 지하층 : 841.01㎡
 - 1층 : 2,766.25㎡
 - 2층 : 2,766.25㎡
 - 3층 : 1,456.67㎡
 - 계 : 7,830.18㎡



◎전라북도남원교육청고시제2001-1호

- 행정절차미비학교시설적합확인
- 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 미비학교의 시설(공부 미등재)에 대하여 적합

- 확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전라북도남원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001년 3 월 3 일
전라북도남원교육청 교육장
- 설립학교별 : 공립
 - 학교명 : 산내초등학교덕동분교장
 - 주 소 :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33외 3필지
 - 대지면적 : 6,403㎡
 - 적합확인 건물현황
 - 건물수 : 9동
 - 면 적 : 930.1㎡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5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

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일반건설업등록공고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	지경력임원	등록년월일
토목공사업-01-0243	백 두 이 엔 씨(주) 110111-2155897 김정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7-2	이 건 호	2001. 2.27.
토목공사업-01-0244	유 승 건 송 선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3-1	송 선 국	"
건축공사업-01-0624	보다나종합건설(주) 110111-2147258 최양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46-3	최 화 엽	"
건축공사업-01-0625	다 우 건 영(주) 110111-1875488 한상원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3-4	전 상 원	"

◎충청북도공고제2001-65호

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설업등록을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충청북도지사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	지경력임원	등록년월일	비고
조경공사업12-0012	동 방 건 설 신병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86-20		2001. 2.26.	
토목공사업12-0220	남 선 종합 건설(주) 황순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21-22		"	
건축공사업12-0112	"	"		"	
토목공사업12-0221	(주)광 일 기 업 남종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75-7		"	

◎충청북도공고제2001-67호

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설업등록을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충청북도지사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	지경력임원	등록년월일	비고
토·건공사업12-0052	(주)동 구 건 설 이종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34-4		2001. 2.27.	
토목공사업12-0222	광 남 종합 건설(주) 곽구연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87-8		"	
토목공사업12-0223	남 광 건 설(주) 유재웅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331-5		"	

○충청남도공고제2001-51호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내용

- 1. 아산시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인가하였기 공고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및 해당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3 월 3 일

충청남도지사

-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아산 도고 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2)위 치 :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일원
- 3)변경사항
 - 당 초 : 1996년 3 월13일~2000년 2 월29일
 - 변 경 : 1996년 3 월13일~2001년12월 말일까지
- 4)변경사유 : 체비지 미 매각에 따른 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보상지연으로 건물 및 지장물을 철거치 못하여 계획공정대로 사업을 추진치 못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1-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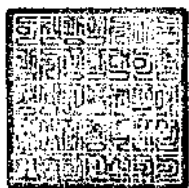
2001년 3 월 1 일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지정 학력 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의 명칭이 변경되고 병설 중학교가 신설되며, 2001년 2 월28일자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한진실업고등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학교장 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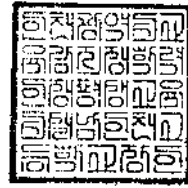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교육감

- 사용년월일 및 폐기년월일 : 2001년 3 월 1 일
- 등록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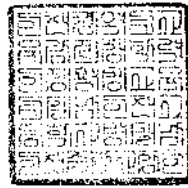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감지정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예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장인



인천광역시교육감지정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남인천고등학교장인



인천광역시교육감지정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남인천고등학교병설남인천중학교장인



인천광역시교육감지정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장인



인천광역시교육감지정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병설예일중학교장인



-폐기관인

인천광역시교육감지정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예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장인



인천광역시교육감지정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남인천고등학교장인



인천광역시교육감지정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남인천고등학교병설남인천중학교장인



인천광역시교육감지정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북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인천광역시교육감지정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한진실업고등학교장인



○(서울)동작구공고제2001-61호

전문건설업체행정처분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동작구청장

전문건설업체행정처분내역

상 호 및 대 표 자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소 재 지	행 정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처 분 일)	근 거 법 령
보성환경개발(주)	비계구조물해체	신대방동 686-3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3월	건설산업기본법
곽 은 중	96-서울-07-18		(기술자)	(2001. 3. 1.~ 2001. 5.31.)	제83조제2호
두성종합건설(주)	토공사업	"	"	"	"
정 두 일	경북02-352				
	비계구조물해체				
	영등포99-07-06				
(주)드	방 기계설비공사업	상도동 324-57	등록기준미달(기	등록말소	"
박 용 선	동작98-12-3		술자 및 소재불명)	(2001. 2.16.)	
(주)한 산 기 건	기계설비공사업	대방동 381-48	등록기준미달(기	"	"
함 노 권	92-서울-12-292		준좌수 및 소재		
			불명)		
(주)한 흥 공 무	기계설비공사업	대방동 336-12	등록기준미달(자	"	"
한 동 흥	96-서울-12-60		본금 및 소재불명)		
삼 보 기 전(주)	기계설비공사업	사당동 1029-44	등록기준미달(기	"	"
임 종 빈	서울-12-206		준좌수 및 소재		
			불명)		
서 보 철 강(주)	기계설비공사업	본동 126-57	"	"	"
이 문 갑	서울-12-15				
천 우 플 랜 트(주)	기계설비공사업	사당동 1046-8	"	"	"
이 태 길	82-12-111				
(주)주 영 토 건	토공사업	사당동 220-55	"	"	"
전 형 호	94-서울-02-02				

상 호 및 대 표 자	업종및등록번호	소 재 지	행정처분사유	처분내용(처분일)	근 거 법 령
	철근콘크리트 94-서울-10-02				
(주)성 흥 건 업 지 성 환	철근콘크리트 96-서울-10-77	신대방동 342-31	등록기준미달(기 준좌수 및 소재 불명)	등록말소 (2001. 2.16.)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한 수 산 업 사 유 명 열	미장방수공사업 82-전남-03-25	신대방동 338-19	"	"	"
삼 광 개 발(주) 홍원식, 김영호	철물공사업 강남97-11-06 철근콘크리트 강남99-10-24 토공사업 강남99-02-21	사당동 1047-45	"	"	"

◎(서울)동작구공고제2001-62호

전문건설업체행정처분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의거
행정처분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동 작 구 청 장

- 상호 및 대표자 : 구도건설(주) 진순오
- 업종 및 등록번호 : 도장공사업 동작99-05-01
- 소재지 : 상도동 20-8
- 행정처분사유 : 하도급위반
- 처분내용 : 과징금(420만원)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서울)서대문구공고제2001-74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9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신
규등록 처리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서대문구청장

- 업종 및 등록번호 :
-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서대문01-30-01
- 도장공사업 서대문01-05-02
- 업체명 : 기정건설
- 대표자 : 김학준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46-1
- 등록일시 : 2001년 2 월26일
- 법인(주민)등록번호 :

◎(서울)성북구공고제2001-64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건설업 신규등록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성 북 구 청 장

전문건설업신규등록현황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상호및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등 록 년 월 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성북-01-13-1	웅 동 건 설 (주) 110111-2163915	김 영 희	서울 성북구 보문7가 112-4 남양빌딩 606호	2001. 2.26.
포장공사업 성북-01-16-3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및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년월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성북-01-13-2 포장공사업 성북-01-16-4	적성건설(주) 권선용 110111-2163840	권선용	서울 성북구 보문7가 112-4 남양빌딩 603호	2001. 2.26.
~~~~~				
<b>◎(서울)은평구공고제2001-76호</b>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에 대해 신규등록 처리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은 평 구 청 장				
○상호(법인)명 및 법인번호 : 명진설비				
○성명(대표자) : 김광배				
○영업소 소재지 : 은평구 신사동 14-51				
○등록업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번호 : 은평-01-27-3-1				
○등록년월일 : 2001년 2월26일				
~~~~~				
◎(부산)북구공고제2001-63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북 구 청 장				
1.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내역				
○상호 및 대표자 : (주)구포도시가스설비 김상규				
○업종 및 면허번호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북구제2000-27-1-02				
○소재지 : 덕천3동 덕천 주공상가 가-201				
○처분내용 : 등록말소				
○처분사유 : 자진반납				
2. 말소일자 : 2001년 2월26일				
~~~~~				
<b>◎(부산)기장군공고제2001-55호</b>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기 장 군 수				
○업종 : 난방시공업(제2종)				
○등록번호 : 부산기장 2001-28-2-1				
○상호 : 제일설비				
○대표자 : 방만석				
○소재지 : 정관면 방곡리 275-5				
○등록일 : 2001년 2월26일				
~~~~~				
◎(대구)달서구공고제2001-48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업체에 대하여 등록수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달 서 구 청 장				
○업체명 : (주)승익건설				
○대표자 : 조용래				
○법인등록번호 : 170111-0187840				
○영업소 소재지 : 대구 달서구 본리동 414				
○기술인력 : 5				
○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번호 : 대구달서구2001-29-1				
○등록일 : 2001년 2월26일				
~~~~~				
<b>◎광명시공고제2001-45호</b>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광 명 시 장				

등 록 번 호	등 록 종 목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광명2001-11-0002	철 물 공 사 업	동우산업(주)	김 옥 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234-1
광명2001-27-0004	가스시설시공업	복 음 설 비	김 정 옥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301-41

(제2종)

◎안양시공고제2001-38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발급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발급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안 양 시 장

- 등록번호 : 01-19-0001(안양)
- 업체명 : 한그루조경
- 대표자 : 고성진
- 법인(주민)등록번호 :
- 영업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6-11
- 등록종목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천시공고제2001-57호

전문건설업추가등록발급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추가등록을 발급하

였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이 천 시 장

- 업종 및 등록번호
  - 토공사업 이천01-02-0001
  - 철콘공사업 이천01-10-0005
- 업체명 : 범아건설(주)
- 대표자 : 권혁철
- 법인등록번호 :
- 영업장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16
- 등록발급일 : 등록교부일

◎평택시공고제2001-74호

전문건설업행정처분내역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제8호 및 10호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평 택 시 장

업	종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치	분	내	용
(주)길 조 설 비	기	계	설	비	한	태	희	평택시 비전동 486-18				등	록
명우산업개발(주)	철	근	·	콘	크리	박	승	호	평택시 비전동 866-7			"	
남 경 건 설(주)	철	근	·	콘	크리	홍	성	옥	평택시 서정동 776-4			"	
(유)영림산업개발	철	근	·	콘	크리	이	중	범	평택시 세교동 406-12			"	
아 산 건 설(주)	포	장				정	병	찬	평택시 지산동 797-17			"	
형 진 산 업(주)	철	근	·	콘	크리	김	윤	옥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1-119			"	
번 영 건 설(주)	철	콘	,	상	하	안	범	진	평택시 평택동 33-3			"	
신 라 건 설(주)	철	근	·	콘	크리	김	상	남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 1257-1			"	
중 양 토 건(주)	토	공	,	상	하	이	천	식	평택시 신장동 302-149			"	

◎청주시공고제2001-66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청 주 시 장

신 규 등 록 내 역

상 호 및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및 등 록 번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기술능력
보 훈 건 설(주) 오 대 균	상당구 율량동 873-7	토공 충북청주 제01-02-03호	150111-0052964	3명
(주)일 영 건 설 장 영 준	상당구 수동 328-7	철콘 충북청주 제01-10-03호	150111-0025349	5명
웅 창 건 설 최 칭	상당구 내덕동 388-11	포장 충북청주 제01-16-02호	150111-0052063	3명
성운산업개발(주) 김 성 호	홍덕구 수곡동 775	도장 충북청주 제01-05-03호	150111-0026589	2명
		실내건축		
		충북청주 제01-01-01호		

※등록일자 : 2001년 2 월27일

◎아산시공고제2001-7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1년 3 월 3 일

아 산 시 장

- 1. 등록일자 : 2001년 2 월26일
- 2. 등록내역

- 상 호 : (주)남명토건
- 성 명 : 강태영
- 소재지 :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산128-2
- 업종 및 등록번호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충남 아산 2001-14-01
- 법인등록번호 : 110111-1694440

◎아산시공고제2001-7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1년 3 월 3 일

아 산 시 장

- 1. 등록일자 : 2001년 2 월26일
- 2. 등록내역

- 상 호 : (주)설화건설
- 성 명 : 이준열
- 소재지 : 아산시 용화동 681
- 업종 및 등록번호  
- 석공사업 충남 아산 2001-04-02  
- 포장공사업 충남 아산 2001-16-01
- 법인등록번호 : 174911-0001701

◎여수시공고제2001-130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전문건설업 등록을 자진반납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등록 말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8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여 수 시 장

- 업 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
- 등록번호 : 여수98-27-04-05
- 상호 및 대표자 : 여수가스 이보석
- 영업소재지 : 여수시 서강동 575-11
- 등록년월일 : 2001년 2 월27일
- 말소사유 : 자진반납

◎화순군공고제2001-63호

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화 순 군 수

○업체명 및 대표자 : (주)대지건설 박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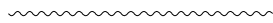
○업 종 : 토공사업

○등록번호 : 전남 화순2001-02-07

○법인(주민)등록번호 : 205211-0015089

○영업소재지 :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65

○등록년월일 : 2001년 2 월26일



◎**화순군공고제2001-64호**

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화 순 군 수

○업체명 및 대표자 : (주)에스엔건설 배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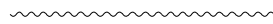
○업 종 : 토공사업

○등록번호 : 전남 화순2001-02-08

○법인(주민)등록번호 : 205211-0014669

○영업소재지 :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254

○등록년월일 : 2001년 2 월26일



◎**화순군공고제2001-65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화 순 군 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정처분대상업체

연번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업 종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처 분 근 거
1	동 강 건 설(주)	유형연	도곡면 대곡리 103	토공,철콘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미달	건설산업기 실내건축 (2001.2.27.~ (자본금미달) 본법제83조 2001. 8.26.) 제2호
2	일 우 건 설(주)	정회공	능주면 잠정리 7-13	철 콘	"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달)	"
3	(주)일 신 기 초	김동욱	화순읍 계소리 142-1	비 계	"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출자 좌수미달)	"
4	(주)그린토탈레져	조영자	남면 사평리 103-5	토공,조정 식재	"	등록기준미달 (출자좌수 미달)	"
5	(주)삼 부 토 건	김윤석	능주면 잠정리 7-19	토공,철콘	"	"	"
6	(주)금 동 건 설	김선희	능주면 잠정리 7-13	철 콘	"	"	"
7	(주)한 일 산 업	송철석	도곡면 대곡리 232	창 호	"	"	"
8	(주)삼미석재공사	이명숙	동면 북암리 80-1	석 공	"	"	"
9	(주)세 일 이	동석	동면 운농리 농공단지 10	철 물, 강구조물	"	"	"
10	(주)원 희 건 설	백준배	춘양면 부곡리 254	철 콘	"	"	"
11	두리진흥건설(주)	조대훈	화순읍 광덕리 128	토공,철콘	"	"	"
12	문 화 건 설(주)	서인석	화순읍 광덕리 374	온 실	"	"	"
13	한 신 건 설(주)	심재홍	화순읍 광덕리 382	보 링	"	"	"

연번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업 종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처 분 근 거
14	(주)한 성	송공준	화순읍 교리 248	토공,철콘	영업정지6월 (2001.2.27~ 2001. 8.26.)	등록기준미달 (출자좌수 미달)	건설산업기 본법제83조 제2호
15	신원산업건설(주)	윤양준	화순읍 교리 221-2	토공,철콘	"	"	"
16	호 남 기 업(주)	조치형	화순읍 대리 373	창 호	"	"	"
17	경 양 건 설(주)	김홍빈	화순읍 대리 369-3	창호,철물	"	"	"
18	(주)일진건설	김복순	화순읍 삼천리 738-7	토공,포장, 철 콘	"	"	"
19	국 엔 지 니 어 링(주)	주 흥한의	화순읍 서대리 228	보 링	"	"	"
20	(주)성 에 너 지 뱅 크	광 광정단	화순읍 일심리851	기계설비	"	"	"

◎구미시공고제2001-76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구 미 시 장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록 년 월 일	영 업 소 소 재 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부민건설	김 사 종	176011-0024428	2001. 2.27.	구미시 봉곡동 430-7
경북구미2001-10-3					
철물공사업	"	"	"	"	"
경북구미2001-11-1					
기계설비공사업	(주)펜 타 텍	김 순 철	176011-0023834	"	구미시 임수동 92-9
경북구미2001-12-2					공구상가 9-315
철물공사업	(주)씨 워 즈	박 상 진	176011-0021804	"	구미시 원평동 1074
경북구미2001-11-2					
토공사업	(주)대하건설	박 시 하	171311-0004916	"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경북구미2001-2-5					625-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	"	"
경북구미2001-13-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모아건설	장 호 윤	176011-0024519	"	구미시 형곡동 321-122
경북구미2001-10-4					

◎안동시공고제2001-50호

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안 동 시 장

○업종 및 등록번호  
- 토공 안동2001-02-05  
- 철콘 안동2001-10-8  
○상 호 : (주)세명건설  
○대표자 : 권영설  
○영업소재지 : 안동시 풍산읍 상리 328-1  
○등록일자 : 2001년 2 월26일

◎영양군공고제2001-22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영 양 군 수

- 1. 등록년월일 : 2001년 2 월23일
- 2. 등록업체 현황
  - 가. 업체명 및 대표자 : (주)화성건설 김차수
  - 나. 업종 및 등록번호
    - 석공사업 : 경북영양2001-04-2

다. 영업소재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157-1

◎마산시공고제2001-94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등록을 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마 산 시 장

업	종	등 록 번 호	등 록년월일	업체명(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재 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마산2001-27-2-40	2001.2.26.	평 화 가 스 (최성룡)		마산시 회원1동 25-19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마산2001-27-2-41	"	공 단가스판매 (구용범)		마산시 봉암동 660-74

◎합천군공고제2001-53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합 천 군 수

- 1. 기업자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합천군수
- 2. 공고건명 : 건설기계 등록 직권말소 통보
- 3. 공고사유 : 건설기계 이해관계인 주소 및 거소 불명
- 4. 공고내용

○대상자

-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삼성중공업(주)
- 부산 동구 초량3동 1185-37 중앙창고(주)

○통보내용

우리군 소재 합천전기(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굴삭기 경남02나8487)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최고)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설기계 등록 직권말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가. 직권말소 건설기계 내역

- 건설기계명 : 굴삭기
- 등록번호 : 경남02나8487

○차대일련번호 : GAY0253

○소유자

- 주 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00-1
- 성 명 : 합천건기(주) 이창경

○비 고 : 검사최고 유효기간 2000년12월 9 일 나. 직권말소사유 : 건설기계 정기검사(최고)의 무위반

다. 직권말소일자 : 2001년 2 월24일

- 5.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건설과(☎055-930-3480)로 연락 바랍니다.

◎충청남도서산소방서공고제2001-5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소방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서산소방서장

- 상호 및 대표자 : 세진전설(주) 이동열
- 영업소재지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120-9
- 등록번호 : 제2001-2호
- 등록일 : 2001년 2월 20일
- 업 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도급한도액 : 153,550,000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공고제2001-3호

관인등록공고

우리교육청 관내 서울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등록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 : 2001년 3월 1일

-신규관인인영

서울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기도수원교육청공고제2001-13호

관인조각사용

국립빛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교육부령 제774호, 2000.11. 6.)에 의거 2001년 3월 1일부터 학교회계가 시행됨에 따라 회계출납원직인을 신규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자 : 2001년 3월 1일

-학교회계출납원인(초등학교)

신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세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매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남창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지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영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시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안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파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고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수원신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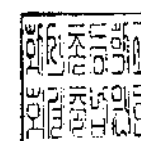
연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매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화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화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수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송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세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산남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권선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산의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구운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징자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매탄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울전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효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정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창용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화양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우만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원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남수원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동수원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조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효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칠보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송죽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곡선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당수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태장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효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신영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영일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수원선일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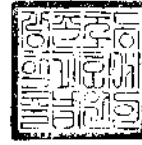
호매실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상률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상촌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숙지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천일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동신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명인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황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청명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송림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원일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영덕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신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송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한일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영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영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탐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대평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일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오목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명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 학교회계출납원인(중학교)

수원북중학교회계출납원인



수성중학교회계출납원인



연무중학교회계출납원인



수원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수일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수성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수일중학교회계출납원인



권선중학교회계출납원인



송원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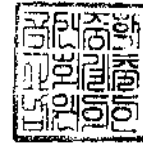
이목중학교회계출납원인



동성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곡선중학교회계출납원인



매원중학교회계출납원인



구운중학교회계출납원인



원천중학교회계출납원인



산남중학교회계출납원인



동수원중학교회계출납원인



남수원중학교회계출납원인



호매심중학교회계출납원인



숙지중학교회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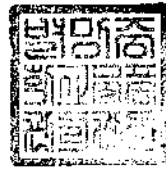
청명중학교회계출납원인



영덕중학교회계출납원인



별망중학교물품관리관인



별망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영통중학교회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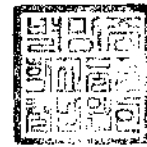
태장중학교회계출납원인



별망중학교분임징수관인



별망중학교물품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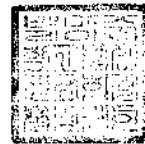
영일중학교회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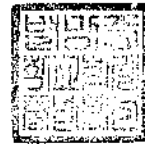
고색중학교회계출납원인



별망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별망중학교회계출납원인



울전중학교회계출납원인



대평중학교회계출납원인



별망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별망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명인중학교회계출납원인



화흥중학교회계출납원인



별망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송호중학교물품관리관인



○경기도안산교육청공고제2001-6호

경기도립학교서법소례의 개정으로 2001년 3월 1일자 신설 개교하는 별망중학교외 6개교에서 사용할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경기도안산교육청 교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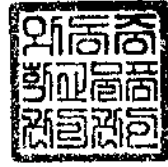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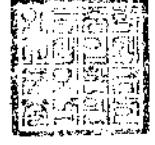








○사용개시일자 : 2001년 3월 1일

송호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송호중학교분임징수관인



<p>송호중학교물품출납원인</p> 	<p>송호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p> 	<p>신천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p> 	<p>와동중학교물품관리관인</p> 
<p>송호중학교회계출납원인</p> 	<p>송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p> 	<p>와동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p> 	<p>와동중학교분임징수관인</p> 
<p>송호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p> 	<p>송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p> 	<p>와동중학교물품출납원인</p> 	<p>와동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p> 
<p>신천중학교물품관리관인</p> 	<p>신천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p> 	<p>와동중학교회계출납원인</p> 	<p>와동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p> 
<p>신천중학교분임징수관인</p> 	<p>신천중학교물품출납원인</p> 	<p>와동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p> 	<p>와동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p> 
<p>신천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p> 	<p>신천중학교회계출납원인</p> 	<p>양지중학교물품관리관인</p> 	<p>양지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p> 
<p>신천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p> 	<p>신천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p> 	<p>양지중학교분임징수관인</p> 	<p>양지중학교물품출납원인</p> 

양지중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양지중학교수입금출납원  
인



양지중학교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인



별망초등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별망초등학교물품출납원  
인



별망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별망초등학교일상경비출  
납원인



양지중학교회계출납원인



양지중학교일상경비출납  
원인



별망초등학교물품관리관  
인



별망초등학교분임징수관  
인



별망초등학교발전기금회  
계출납원인



별망초등학교수입금출납  
원인



별망초등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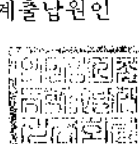
안산양지초등학교물품품관  
리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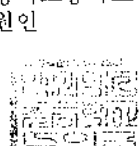
안산양지초등학교분임징  
수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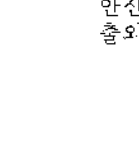
안산양지초등학교발전기  
금회계출납원인



안산양지초등학교수입금  
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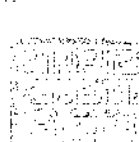
안산양지초등학교세입세  
출외현금출납원인



안산양지초등학교발전기  
금회계경리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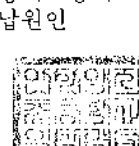
안산양지초등학교물품출  
납원인



안산양지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



안산양지초등학교일상경  
비출납원인



안산양지초등학교세입세  
출외현금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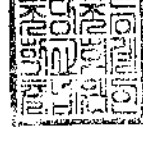




○경기도안산교육청공고제2001-7호

공립및국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45조에 따른  
우리청 관내 공립초·중등학교의 직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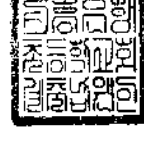

















2001년 3 월 3 일



경기도안산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자: 2001년 3 월 1 일

<p>고장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안산원곡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p> 	<p>삼일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화랑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관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정재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신일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상록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안산중앙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p> 	<p>원일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시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안산화정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p> 
<p>본오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석호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본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와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호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경일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반월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안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안산서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p> 	<p>덕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안산광덕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p> 	<p>초당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선부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상포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매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대부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대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대남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장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육터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이호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안산부곡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p> 	<p>시흥신일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p> 	<p>대야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안산석수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p> 	<p>능길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시흥은행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p> 	<p>정왕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정지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소래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냉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서해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도창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포리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은계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함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계수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연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송운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복간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군창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군서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시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서촌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시흥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신천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시곡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선부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하중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진말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안산부곡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반월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성안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경수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군자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소래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송호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원곡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대흥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대부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관산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중앙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송운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징왕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원일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성포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시흥은행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서해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본오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상복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시흥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p>함원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p> 

경수중학교회계출납원인    연성중학교회계출납원인



장곡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성안중학교회계출납원인



○경기도여주교육청공고제2001-2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에 의거 설치하는 학교 회계가 시행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용하는 직인을 국립및공립초·중등 학교회계규칙 제45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경기도여주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1년 3월 1일

여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연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여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검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점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뇌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가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금당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능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능북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문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상풍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천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오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송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배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홍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이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신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송촌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북내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오학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평택성동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평택중앙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강천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여주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



평택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평일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여주여자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



점동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



죽백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비전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홍천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



이포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



합정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덕동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상품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



강원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



소사벌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세교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군문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서정리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송단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송북초등학교교회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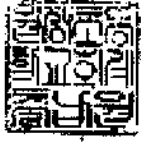




◎경기도평택교육청공고제2001-5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및 동법 제30조의 3에 의거 학교회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국립및공립초·중등회계규칙 제45조에 의거 관내 초·중등학교회계출납원인 직인을 등록하고 사무과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경기도평택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 : 2001년 3월 1일

<p>송신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복창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풍덕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오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지장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평택지산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인</p> 	<p>창신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안중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이충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송일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현화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칭북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부용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평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어연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삼덕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계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진위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현덕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가사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갈곶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서탄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내기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원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고덕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호덕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홍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p> 	<p>평택중학교회계출납원 인</p> 

평택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송탄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세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안일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현화중학교회계출납원인 청북중학교회계출납원인



포승중학교회계출납원인



◎경기도평택교육청공고제2001-6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조례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39조제2항에 의거 2001년 3월 1일 학교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을 폐기하도록 되어있는 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경기도평택교육청 교육장

○폐기일 : 2001년 3월 1일

평택성동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평일중앙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평택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평일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죽백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비전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합정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덕동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소사별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세교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군문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서정리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송탄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송북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송진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복창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지정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평택지산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이충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부용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계성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갈곶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고덕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종덕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창신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송일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팽성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진위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서단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효덕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오성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안중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원화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어연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현덕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대기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홍원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포송중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정북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삼덕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가사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원정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원화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세교중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강원도고성교육청공고제2001-1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교육부령 제774  
조)의 제정으로 우리교육청관내 공립초·중학교의  
공인을 2001년 3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교부하였

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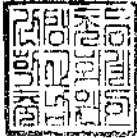
2001년 3월 3일

강원도고성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자 : 2001년 3월 1일

간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광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거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거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선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죽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평파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죽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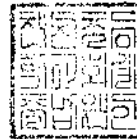
공현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오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천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아야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동광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도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고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거진중학교회계출납원인

대진중학교회계출납원인



동광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라북도순창교육청공고제2001-5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옥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폐기를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전라북도순창교육청 교육장

○폐기일 : 2001년 3월 1일

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라북도장수교육청공고제2001-3호

공인폐기

2001년 2월28일자로 분담는 장계남초등학교의 공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17조에 의하여 폐기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전라북도장수교육청 교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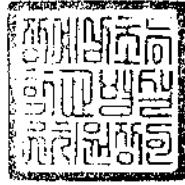
○폐기일자 : 2001년 2월28일

장계남초등학교장인

장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계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장계남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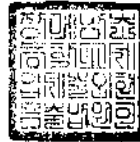
장계남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장계남초등학교세입새출외현금출납원인



장계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장계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라남도순천교육청공고제2001-10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지정내용을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 1. 발주청 : 전라남도순천교육청
-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 가. 업체명 : 청도건설(주)

나. 면허번호 : 토목건축공사업 1539호

다. 대표자 : 이승봉

라. 소재지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37-9

3. 지성일자 및 유효기간

가. 지정일자 : 2001년 3월 2일

나. 유효기간 : 2001년 3월 2일~2002년 3월 1일

◎경상북도경주교육청공고제2001-4호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가 2001년 2월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01년 3월 1 일자로 개원(교)하는 용황유치원 및 용황초등학교의 직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경상북도경주교육청 교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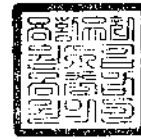
○등록일 : 2001년 2월26일

용황유치원장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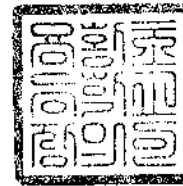
용황유치원수입금출납원의인



용황초등학교장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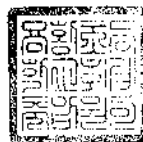
용황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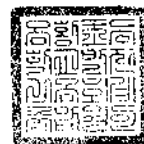
용황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용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용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상북도안동교육청공고제2001-2호

관인신규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교육부령 제774호)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교육청 소속 초·중등학교회계출납원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경상북도안동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자: 2001년 3월 1일

안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안동서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안동동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안동송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북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안동용상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길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영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안동영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영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상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봉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풍북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선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와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부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풍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풍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신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일직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일직남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남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남신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임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길안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임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월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윤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녹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안동중학교회계출납원인



안동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북주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길주중학교회계출납원인



임동중학교회계출납원인



북후중학교회계출납원인



길안중학교회계출납원인



풍천중학교회계출납원인



도산중학교회계출납원인



○경상북도영주교육청공고제2001-2호

관인폐기공고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에 의하여 관인폐기를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3일

경상북도영주교육청 교육장

○폐기일 : 2001년 3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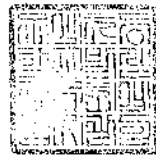
오계초등학교장인

오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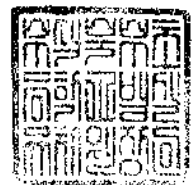
오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오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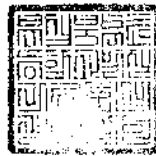
부석북부초등학교장인

부석북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부석북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부석북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기 타

##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1년 3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연 사 건 번 호	도 연 압 수 번 호	도 피 의 자 또 는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압 수 물 건		명	수 량
						번 호	물 건		
98	80837	98 3311	백승재외1인	특가(강도)등	윤 공 익	23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2000	10072	2000 384	방광현외2인	특가(도주차량)등	방 광 현	17	반지갑(검정색)		1개
					차 민 구	18	반지갑(검정색)		1개
					"	19	명함등		6장
					"	20	주택은행직불카드		1점
					"	21	메모지		5장
					"	22	차민구사진		1장
					"	23	폴라긴팔T셔츠		1장
					"	24	전화번호수첩		1개
					"	25	음악테이프		1개
					"	26	구두솔		1개
					"	27	라이타1개, 성냥2개		총3개
	49789	2308	유 인 원	야간주거침입절도	불 상	2	휴대용공구함		1점
	51019	2372	홍 성 현	폭 력 행 위 등	"	4	코렉스자전거		1대
	66731	3036	김대식외1인	특 수 절 도 등	김 목 식	1	국민은행일십만원수표		1매
					"	2	조흥은행일십만원수표		1매
					"	7	외환은행일십만원수표		1매
					"	8	중소기업은행일십만원수표		1매
					"	9	국민은행일십만원수표		1매
					"	10	농협은행일십만원수표		1매
	69019	3042	김 명 환	특 가(절 도)	불 상	1	리복신발		1점
					"	2	아디다스플라스웨터(속색)		1점
					"	3	아디다스플라스웨터(회색)		1점
					"	4	아디다스수영모자		1점
	71158	3131	원 영 희	"	"	104	배낭가방(회색)		1점
					"	105	배낭가방(하늘색)		1점
					"	106	검정가방		1점
2001	3610	2001 67	황정락외2인	특수절도미수	"	1	차량안개등		2점
	5324	119	이재선외1인	특 수 절 도 등	"	1	대림텍트50cc오토바이		1대
	5501	132	이제승외1인	"	"	1	효성슈퍼캡50cc오토바이		1대
					"	2	오토바이열쇠		1개

연 사 건 번 호	도 연 압 수 번 호	도 피 의 자 또 는 피 고 인	또 는 인 죄	명 환 부 인	압 수 물 건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1	6244	2001	178	구 자 성 절 도 등 불 상	"	1 대림혼다49cc오토바이(검정)	1대
				"	"	2 오토바이열쇠	1개
	6590		195	김 요 한	"	1 대림텍트50cc오토바이	1대
	6756		202	김동훈외1인 특 수 절 도 등	"	1 대림텍트50cc오토바이	1대
	7442		213	김성하외2인	"	1 대림텍트50cc오토바이(빨강)	1대
	7446		217	원 유 빈 절 도 등	"	1 대림125cc오토바이 (차대번호1097878)	1대
				"	"	2 오토바이열쇠	1개
	9286		285	전 가 은 절 도	"	6 반지갑	1개
				"	"	7 한국은행일만원권지폐	1매
				"	"	8 한국은행일백만원권주화	6개
				"	"	9 한국은행오십만원권주화	2개
	10075		317	성 명 불 상	"	1 삼천리자전거	1대
	10166		329	송현철외5인 특 수 절 도 등	"	11 대림텍트50cc오토바이	1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1년 3 월 3 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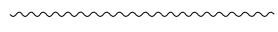
연 사 건 번 호	도 연 압 수 번 호	도 피 의 자 또 는 피 고 인	또 는 인 죄	명 환 부 인	압 수 물 건		
					번 호 물	건 명 수 량	
93	26445	93	975	임인섭외2인 향정신성의약품 위 반	성명불상	3 무선호출기	1개
				"	"	4 무선호출기	1개
				"	"	13 삼성HQ비디오	1대
2000	20544	2000	742	하 경 삼 성 폭 력 등	"	2 식칼	1개
				"	"	3 과도	1개
	56186		1984	장 성 환	"	10 14K금목걸이	1개
				"	"	11 18K큐백반지	1개
				"	"	12 18K금반지	1개
	73253		2559	송자화외1인 특 가 법 위 반	"	1 LG하이비디오	1대
				"	"	2 삼성윙고오디오	1대
				"	"	3 삼성무비카메라	1대
				"	"	4 삼성카메라	1대
				"	"	5 캐논카메라	1대
				"	"	6 소형카세트(RQ-SX60)	1대
				"	"	7 소형카세트(RQ-SX60)	1대
				"	"	8 여자용로만손목시계	1점
				"	"	9 진주목걸이	1점

연 사 건 번 호	도 연 압 수 번 호	도 피 의 자 또 는 죄	명 환 부 인	압 수 물 건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0	76796	2000 2732	김상우외5인 특 수 절 도 성명불상	9	여자용진주반지	1점
			"	10	여자용진주반지	1점
			"	11	여자용진주반지	1점
			"	12	여자용진주반지	1점
			"	14	여자용18K새모양반지	1개
			"	15	여자용18K뿔모양반지	1개
			"	16	여자용18K대각선반지	1개
			"	17	여자용18K리본모양반지	1개
			"	18	여자용18K꽃모양반지	1개
			"	19	여자용18K링반지	1개
			"	20	여자용루비반지	1개
			"	21	여자용사파이어반지	1개
			"	22	여자용루비반지	1개
			"	23	여자용루비반지	1개
			"	24	18K나뭇잎모양반지	1개
			"	25	여자용18K돌모양반지	1개
			"	26	여자용18K바위모양반지	1개
			"	27	여자용18K달리반지	1개
			"	28	여자용에메랄드반지	1개
			"	29	여자용비취반지	1개
			"	30	여자용비취반지	1개
			"	31	여자용방패모양반지	1개
			"	32	여자용18K사파이어팔찌	1개
			"	33	여자용18K미라볼팔찌	1개
			"	34	여자용18K파배기팔찌	1개
			"	35	여자용18K루비반지	1개
			"	36	여자용18K미라볼팔찌	1개
			"	38	여자용18K진주목걸이	1개
			"	39	여자용18K미라볼목걸이	1개
			"	40	여자용18K체인목걸이	1개
			"	41	여자용18K파배기목걸이	1개
			"	42	여자용18K파배기목걸이	1개
			"	43	여자용18K파배기목걸이	1개
			"	44	여자용18K방패모양목걸이	1개
					메달	
	80706	2850	이 경 규 점유이탈물횡령 이 승 준	1	주민등록증(이승준)	1개
	105728	3913	조경호외1인 절 도 성명불상	1	49CC메시지오토바이 (환가대금5만원)	1대

연 사 건 번 호	도 연 압 수 번 호	도 피 의 자 또 는 고 인	죄	명 환 부 인	압 수 물 건		
					번 호 물	건 명 수량	
2000	108618	2000 3993	이 승 형 절	도 성명불상	1	49CC텍트오토바이 (환가대금5만원)	1대
	108617	3995	차환기외1인	"	"	1 49CC텍트오토바이 (환가대금5만원)	1대
	109201	4029	최명훈외1인	특 수 절 도	"	1 49CC오토바이 (환가대금5만원)	1대
	110362	4065	김재정의외1인	"	"	1 49CC텍트오토바이 (환가대금3만원)	1대
	111087	4086	채 상 진 절	도	"	1 49CC텍트오토바이 (환가대금7만원)	1대
	112561	4144	이봉호외1인	특 수 절 도	"	1 효성49CC오토바이 (환가대금4만원)	1대
	113421	4151	이준혁외5인	"	"	3 49CC오토바이 (환가대금5만원)	1대
	114033	4176	신용우외1인	점유이탈물횡령	"	1 50CC대림오토바이 (환가대금5만원)	1대
	114168	4188	이 동 활 절	도	"	1 49CC오토바이 (환가대금5만원)	1대
2001	356	4266	정현용외3인	"	"	1 49CC검정색오토바이 (환가대금6만5천원)	1대
						2 검정헬멧(위환가대금에포함)	1개
	4436	2001 60	김성태외1인	"	"	1 49CC검정색오토바이 (환가대금3만원)	1대
	5288	78	이 중 호	"	"	1 49CC빨간색오토바이 (환가대금4만원)	1대
						2 오토바이열쇠 (위환가대금에포함)	1개
	5330	93	유 영 환	"	"	1 125CC대림오토바이 (환가대금5만원)	1대
						2 오토바이번호판	1개
	6063	119	배대호외1인	폭 력 행 위 등	"	1 한국은행발행백원권	8매
						2 한국은행발행백원권	8매
	7436	166	김지훈외2인	특 수 절 도	"	1 49CC텍트오토바이 (환가대금4만원)	1대
						2 위오토바이키	1개
	8567	186	이영돈외2인	"	"	2 49CC텍트오토바이 (환가대금6만원)	1대

연 사 건 번 호	도 연 압 수 번 호	도 피 의 자 또 는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압 수 물 건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1 10741	2001 311	배 준 형 절	도 이 승 준	1	49CC오토바이 (환가대금5만원)	1대
12270	338	윤치윤외2인 도로 교통 법	"	1	125CC대림오토바이 (환가대금5만원)	1대
14376	414	김 주 옥 절	도 "	1	한국은행발행천원권	6매
~~~~~						
○공 시 최 고						
다음 실종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다음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종선고를 받는다.						
2000 느단 98 청구인 백연수				2001 느단 111 청구인 민영하		
본 적 나주시 이창동 37				본 적 전남 장성군 북이면 조양리 269		
주 소 나주시 이창동 37				주 소 광주 서구 금호동 740의 2 삼능공간아파트 103동 502호		
사건본인 백 창 숙				사건본인 민 대 호		
(부재자) 1970년 5 월23일생				(부재자) 1910년10월13일생		
본 적 나주시 이창동 37				본 적 전남 장성군 북이면 조양리 269		
최후주소 나주시 이창동 37				최후주소 소재불명		
○공시최고 기일 2001년 8 월31일				○공시최고 기일 2001년 9 월20일		
2001년 2 월20일				2001년 2 월2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최인규				광주지방법원 판사 최인규		
~~~~~						
<b>2001 느단 110</b> 청구인 이용길				<b>2001 느단 68</b> 청구인 강영일(姜永一)		
본 적 서울 관악구 신림동 587의 97				본 적 경남 산청읍 정곡리 643의 2		
주 소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9				주 소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373의 8		
주공아파트 206동 1109호				송달장소 경남 합천군 가회면 덕촌리 430		
사건본인 이 인 수				사건본인 강 영 철(姜 永 喆)		
(부재자) 1928년 7 월16일생				(부재자) 1944년11월 5 일생		
본 적 광주 남구 칠석동 206				본 적 경남 산청읍 정곡리 643의 2		
최후주소 광주 남구 칠석동 206				최후주소 진해시 용원동 산118-2(3/1)		
○공시최고 기일 2001년 9 월20일				○공시최고 기일 2001년 9 월30일		
2001년 2 월22일				2001년 9 월30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최인규				창원지방법원 판사 오경미		
~~~~~						
2001 느단 74 청구인 양정자(梁貞子)				2001 느단 74 청구인 양정자(梁貞子)		
본 적 동해시 발한동 256				본 적 동해시 발한동 256		
주 소 동해시 발한동 256(8/5)				주 소 동해시 발한동 256(8/5)		
사건본인 정 수 화(鄭 守 和)				사건본인 정 수 화(鄭 守 和)		
(부재자) 1965년 4 월16일생				(부재자) 1965년 4 월16일생		

본 적 동해시 발한동 256
 최후주소 마산시 양덕동 166의 44(14/4)
 ○공시최고 기일 2001년 9 월30일
 2001년 2 월23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오경미



○심 판

99 느단 116 청구인 노순례(盧順禮)
 본 적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518
 주 소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518

사건본인 (부재자) 임 재 경(林 裁 京)
 1959년 5 월20일생
 본 적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518
 최후주소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518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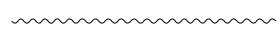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84년12월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1999년12월19일 사건본인(부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 7 월 9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사건본인(부재자)은 1979년12월31일 이후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0월20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사 이승훈



2000 느단 41 청구인 김해월(金孩月)
 본 적 공주시 옥룡동 369
 주 소 공주시 옥룡동 5 금강빌라 1동 206호

사건본인 (부재자) 공 순 옥(孔 順 玉)
 1952년 8 월21일생
 본 적 공주시 옥룡동 369
 최후주소 공주시 옥룡동 369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78년12월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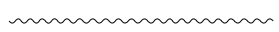
이 유

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00년 5 월12일 사

건본인(부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12월 2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사건본인(부재자)은 1973년12월31일 이후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2월26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사 이승훈



2000 느단 37 청구인 최옥동(崔玉童)
 본 적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 217
 주 소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71의 2

사건본인 (부재자) 홍 성 원(洪 成 元)
 1925년 1 월22일생
 본 적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 217
 최후주소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 217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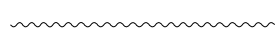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55년 6 월30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00년 5 월 1 일 사건본인(부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11월17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사건본인(부재자)은 1950년 6 월30일 이후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1월24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사 이승훈



2000 느단 18 청구인 차봉식(車奉植)
 본 적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478
 주 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의 82

사건본인 (부재자) 차 종 열(車 鍾 烈)
 1963년 3 월 3 일생
 본 적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478
 최후주소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478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70년 4 월30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00년 3 월16일 사건본인(부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10월 4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사건본인(부재자)은 1965년 4 월30일 이후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0월20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사 이승훈
 ~~~~~

**2000 느단 19** 청구인 김정구(金正求)  
 본 적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32  
 주 소 의왕시 포일동 540 청화아파트 1동 901호

사건본인 김 정 선(金正宣)  
 (부재자)  
 1951년11월27일생  
 본 적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32  
 최후주소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32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75년10월 7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00년 3 월20일 사건본인(부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10월10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사건본인(부재자)은 1970년10월 7 일 이후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0월20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사 이승훈  
 ~~~~~

2000 느단 36 청구인 최진원(崔鎭元)
 본 적 대전 서구 변동 16의 30
 주 소 대전 서구 변동 16의 30

사건본인 최 정 애(崔貞愛)
 (부재자)
 1956년 3 월15일생
 본 적 대전 서구 변동 16의 30
 최후주소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180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76년12월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00년 4 월27일 사건본인(부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11월17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사건본인(부재자)은 1971년12월31일 이후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1월24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사 이승훈
 ~~~~~

**2000 느단 23** 청구인 김영건(金榮建)  
 본 적 공주시 탄천면 국동리 16  
 주 소 공주시 탄천면 국동리 19

사건본인 한 영 례(韓永禮)  
 (부재자)  
 1931년 8 월19일생  
 본 적 공주시 탄천면 국동리 16  
 최후주소 충남 청양구 화성면 용당리 154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70년 5 월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00년 3 월24일 사건본인(부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10월14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사건본인(부재자)은 1965년 5 월31일 이후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0월20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사 이승훈  
 ~~~~~

2000 느단 428 청구인 김천수
 본 적 울산 남구 무거동 572의 13
 주 소 울산 남구 무거동 572의 13

사건본인 김 현 옥
 (부재자)
 1965년 3 월15일생

본 적 울산 남구 무거동 572의 13
 최후주소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215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 김현옥은 실종되어 1973년 8 월 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신고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공시최고 기일인 2001년 2 월14일까지 생존의 신고가 없으므로 사건본인(부재자)이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1년 2 월20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최인규

2000 느단 437 청구인 김웅기
 본 적 광주 북구 임동 53
 주 소 광주 북구 임동 53
 사건본인(부재자) 김 삼 순
 1965년 9 월14일생
 본 적 광주 북구 임동 53
 최후주소 광주 북구 임동 53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 김삼순은 실종되어 1975년11월 15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신고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공시최고 기일인 2001년 2 월18일까지 생존의 신고가 없으므로 사건본인(부재자)이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1년 2 월20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최인규

2000 느단 728 청구인 전종화
 본 적 대구 북구 도남동 116
 주 소 구미시 교문동 809의 1
 하나아파트 205동 302호
 사건본인(부재자) 김 순 자
 1927년 3 월23일생
 본 적 대구 북구 도남동 116

최후주소 대구 북구 도남동 116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대구북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적어도 1997년12월 8 일경까지 생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후 민법 제27조제1항에 정해진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1년 1 월 9 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은신

2000 느단 78 청구인 신영란
 본 적 대구 남구 봉덕동 1338의 40
 주 소 대구 북구 대현동 25의 10
 사건본인(부재자) 남 홍 범
 1964년 5 월 5 일생
 본 적 청구인과 같다
 최후주소 대구 남구 봉덕동 1392의 7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98년10월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신고한다.
 이 유
 위 실종신고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0년 2 월 7 일 부재자의 실종신고에 대한 공시최고 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 8 월31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0월14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은신

99 느단 15 청구인 김순자의 수계인 이상득
 본 적 대구 북구 읍내동 373
 주 소 대구 북구 읍내동 373
 사건본인(부재자) 이 상 일
 1960년 2 월 3 일생
 본 적 대구 북구 읍내동 373
 최후주소 대구 북구 읍내동 373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86년 9 월2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신고한다.

이 유
 위 실종신고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1999년 1 월18일 부재자의 실종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1999년 8 월31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0월 9 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은신

~~~~~

**2000 느단 243** 청구인 윤귀철  
 본 적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  
 주 소 대구 중구 동인동1가 313의 2  
 송달장소 대구 동구 신천3동 9의 9

사건본인 (부재자) 윤 구 자(尹 邱 子)  
 1940년 6 월16일생  
 본 적 청구인과 같다.  
 최후주소 대구 동구 신천동 986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46년12월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신고한다.

이 유  
 위 실종신고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0년 3 월16일 부재자의 실종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 9 월30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0월 9 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은신

~~~~~

2000 느단 728 청구인 전종화
 본 적 대구 북구 도남동 116
 주 소 구미시 교문동 809의 1
 하나아파트 205동 302호

사건본인 (부재자) 김 순 자
 1927년 3 월23일생
 본 적 대구 북구 도남동 116
 최후주소 대구 북구 도남동 116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대구북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적어도 1997년12월 8 일경까지 생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후 민법 제27조제1항에 정해진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1년 1 월 9 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은신

~~~~~

**99 느단 1556** 청구인 김순량  
 본 적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556  
 주 소 대구 서구 비산동 1000의 12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86의 16  
 삼양빌딩 3, 4층

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박연수, 홍준영

사건본인 (부재자) 이 천 득(李 千 得)  
 1957년12월26일생  
 본 적 청구인과 같다  
 최후주소 청구인과 같다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98년11월2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신고한다.

이 유  
 위 실종신고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1999년12월30일 부재자의 실종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 6 월30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 7 월11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한상규

~~~~~

99 느단 1619 청구인 서정애
 본 적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1430의 1
 주 소 여주시 오림동 410의 1

사건본인 (부재자) 유 재 성

<p>1955년 9 월 3 일생 본 적 청구인과 같다 최후주소 대구 서구 평리5동 1537의 23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99년11월16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실종신고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1999년12월30일 부재자의 실종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 6 월30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 8 월22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한상규</p>	<p>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62년12월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실종신고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0년 3 월 2 일 부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 9 월30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1월 2 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한상규</p>
<p>~~~~~ 99 느단 1631 청구인 심상달 본 적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84 주 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521 사건본인 황 현 철 (부재자) 1982년 6 월16일생 본 적 청구인과 같다. 최후주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851의 1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89년12월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실종신고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0년 4 월27일 부재자의 실종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10월31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2월 6 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한상규</p>	<p>~~~~~ 2000 느단 47 청구인 박영호 본 적 대구 남구 대명동 3027 주 소 대구 동구 신암동 68의 44 사건본인 박 준 호 (부재자) 1946년11월21일생 본 적 청구인과 같다 최후주소 경남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 402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67년12월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실종신고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0년 2 월 8 일 부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 8 월15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0년10월14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은신</p>
<p>~~~~~ 2000 느단 144 청구인 이영우 본 적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169 주 소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38의 6 사건본인 이 현 우 (부재자) 1954년 4 월13일생 본 적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169 최후주소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169</p>	<p>~~~~~ 2000 느단 127 청구인 광경규 본 적 대구 서구 내당동 870의 1 주 소 대구 북구 관음동 1370 한양수정 204동 1203호 사건본인 광 순 자 (부재자) 1952년 3 월15일생 본 적 청구인과 같다 최후주소 경북 달성군 논공읍 남동 656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64년 5 월31일 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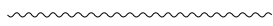
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신고한다.

이 유

위 실종신고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0년 2 월18일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 일인 2000년 8 월31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 과 같이 심판한다.

2001년 1 월 9 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은신



2000 느단 81 청구인 장 학

본 적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56

주 소 서울 중랑구 망우1동 365의 10

사건본인 홍 백 년 (부재자)

1906년 1 월 6 일생

" 장 두 시

1928년 5 월15일생

사건본인들의

본 적 청구인과 같다

최후주소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신장리 번지불상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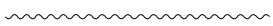
사건본인(부재자)들은 실종되어 1985년 7 월 1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신고한다.

이 유

위 실종신고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2000년 2 월 10일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 8 월31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1년 1 월 9 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은신



2000 느단 255 청구인 전일석

본 적 대구 중구 대신동 298

주 소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62의 443

대리인 변호사 권준호

사건본인 오 순 자(吳 順 子) (부재자)

1961년10월13일생

" 오 정 규(吳 正 圭)

1971년10월28일생

사건본인들의

본 적 대구 중구 대신동 298

최후주소 대구 중구 대신동 298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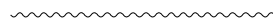
사건본인(부재자)들은 실종되어 1981년 5 월 6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신고한다.

이 유

위 실종신고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0년 3 월17일 부재자들의 실종신고에 대한 공시 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0년 8 월31 일 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1년 1 월 9 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은신



2000 느단 145 청구인 오이창

본 적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798

주 소 대구 수성구 황금동 970의 1

사건본인 오 두 창 (부재자)

1964년 3 월15일생

본 적 청구인과 같다

최후주소 대구 북구 북현동 140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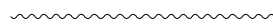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대구북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적어도 2000년 6 월30일경까 지 생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생사가 불명하 게 된 후 민법 제27조제1항에 정해진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 건 청구는 이유없이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1년 1 월 9 일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은신



2000 느단 294 청구인 공영자(孔英子)

본 적 창원시 봉림동 699

주 소 창원시 봉림동 678

사건본인 이 미 경(李 美 京) (부재자)

1972년 4 월13일생

본 적 창원시 봉림동 699
 최후주소 창원시 봉림동 699
 주 문
 사건본인 이미경은 실종되어 1989년 4 월20일 실
 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00년 4 월 4 일 사건본
 인이 생존하여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시최고 하
 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1년 2 월14일까지 그 생
 존의 신고가 없으며, 사건본인은 1984년 4 월20일경
 친구들과 놀러나간후 돌아오지 않고, 그 동안 여러곳
 을 수소문하였으나 전혀 행방을 알 수가 없고, 현재까
 지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
 다.

2001년 2 월23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오경미

2000 느단 435 청구인 손원태(孫元泰)

본 적 진해시 자은동 산1
 주 소 진해시 경화동 1172의 42
 대리인 변호사 최성락

사건본인 손 인 수 (부재자)

1961년 5 월12일생

본 적 청구인과 같은 곳
 최후주소 진해시 경화동 1130의 12
 주 문

사건본인 손인수는 실종되어 1999년 9 월28일 실
 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00년 6 월30일 사건본
 인이 생존하여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시최고하
 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1년 2 월 6 일까지 그 생
 존의 신고가 없으며, 사건본인은 1998년 9 월11일
 18 : 0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서방포구에서 신청외
 허명운 소유의 18청신호에 선장인 문만석을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여 서해안에서
 조업중 어항부진으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달 28일 01 : 25경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100마일 해
 상을 향해하던 중 선체가 침몰하여 현재까지 그 생사

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1년 2 월23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오경미

2000 느단 436 청구인 한말임(韓末任)

본 적 진해시 행암동 196
 주 소 창원시 봉곡동 62의 5
 대리인 변호사 최성락

사건본인 정 청 기(鄭 靑 杞) (부재자)

1961년 8 월31일생

본 적 진해시 행암동 196
 최후주소 진해시 경화동 1181의 59
 주 문

사건본인 정청기는 실종되어 1999년 9 월28일 실
 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00년 6 월30일 사건본
 인이 생존하여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시최고하
 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1년 2 월 6 일까지 그 생
 존의 신고가 없으며, 사건본인은 1998년 9 월11일
 18 : 0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서방포구에서 신청외
 허명운 소유의 18청신호에 선장인 문만석을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여 서해안에서
 조업중 어항부진으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같
 은 달 28일 01 : 25경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100마일 해
 상을 향해하던 중 선체가 침몰하여 현재까지 그 생사
 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1년 2 월23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오경미

○상속재산관리인의선임공고

이 법원 2000느단7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사
 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다음과 같
 이 이를 공고한다.

다 음

- 1. 심판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송달장소 전남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552
(소관 영광지부)

사 장 문동신

1. 사건본인(망) 강명원

본 적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15

최후주소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05

1. 사건본인의 출생장소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15

생년월일 : 1957년 3 월15일생

사망일시 및 장소 : 1999년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
남리 105

1. 상속재산관리인 배종복

전남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552

2001년 2 월1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송혜영

○배 당 공 고

2000 하 9 파산선고

파 산 자 충성교회신용협동조합

위 사건에 관하여 본 파산 관재인은 제1회 배당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종류 및 총액

○채권의 종류 : 일반채권(대지급채권 및 기타채
권)

○채권의 총액 : 금4,958,737,745원정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금503,311,880원정

2001년 3 월 3 일

충청교회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노강규

